



<http://www.mifaff.go.kr>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8. 7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8. 7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 〈목 차〉

<b>〈제1부〉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	<b>1</b>
<b>제1장 총 설</b>	<b>3</b>
I. 현 황	3
II. 도농교류	13
III. 법 제정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7
IV.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3
V. 입법례	32
<b>〈제2부〉 도농교류촉진법 내용</b>	<b>37</b>
<b>제1장 총 칙</b>	<b>39</b>
▣ 목 적(제1조)	39
▣ 정 의(제2조)	4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55
▣ 다른 법과의 관계(제4조)	55
<b>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b>	<b>56</b>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5조)	56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6조)	64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제7조)	66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제8조)	7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9조)	72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10조)	73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제11조)	76
<b>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b>	<b>77</b>
▣ 도농교류활동의 지원(제12조)	77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13조)	81
▣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제14조)	83
▣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15조)	83
▣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제16조)	91

<b>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b> .....	<b>96</b>
▣ 도농 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제17조) .....	98
▣ 인증심사위원회(제18조) .....	103
▣ 인증의 취소(제19조) .....	106
▣ 전문인력 활용(제20조) .....	107
<b>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b> .....	<b>109</b>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21조) .....	109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제22조) .....	112
<b>제6장 보 칙</b> .....	<b>113</b>
▣ 세제 및 금융 지원(제23조) .....	113
▣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제24조) .....	117
▣ 홍보 및 조사·연구(제25조) .....	120
▣ 권한의 위임·위탁(제26조) .....	122
<b>제7장 벌 칙</b> .....	<b>124</b>
▣ 벌 칙(제27조) .....	124
▣ 과태료(제28조) .....	125
<b>&lt;제3부&gt; Q &amp; A</b> .....	<b>127</b>
<b>&lt;제4부&gt;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 3단비교</b> .....	<b>133</b>
<b>■ 부록</b> .....	<b>199</b>
▣ 부록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소방시설법) .....	201
▣ 부록 2 영업의 종류(식품위생법) .....	205
▣ 부록 3 업종별 시설기준(식품위생법) .....	207
▣ 부록 4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 .....	212



## 제 1 부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장 총 설

## I. 현 황

### 1. 변화하는 사회

- ① 사회의 발전양상이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개발’ 중심에서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전·전승’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환경·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웰빙,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신적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② 이에 따라 안전한(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농식품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③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전통적 생산기능을 담당해 왔던 농어촌은 자연과 더불어 전원생활을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향유, 농어촌전통문화 및 따스하고 인간적인 농어촌 특유의 가치 체험, 여유로운 전원생활 등 농어촌이 제공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과 개발 가능성에 대해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④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른 관광의 고급화 등 외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한 여유로운 삶에 대한 회귀 등 삶의 가치관 변화로 관광 및 여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문화 역시 ‘보는것(Seeing)’에서 ‘해보는것(Doing)’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여가생활에서 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여가문화에 맞춰 자연중심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농촌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⑤ 또한 기업이 농어촌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모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이슈의 증대,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가, 인터넷 보급에 따른 정보화 및 지식의 재생산 등 기업환경의 변화로 기업들은 농어촌을 자신들이 생산한 물품의 소비처로서 인식하기보다 생산자원의 공급자이자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정서적 휴식처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기업과 상생해야 하는 지역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 불균형 성장 등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

## 2. 농어촌의 현실

- 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대체로 인구밀도가 낮고 토지이용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또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띄고 있다.
- ②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농촌생활여건의 악화이다.
- ③ 인구감소, 고령화문제, 취약한 산업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청·장년층의 유출은 지역혁신을 위한 인적자원과 역량 부재라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연령별 농촌인구의 변화 추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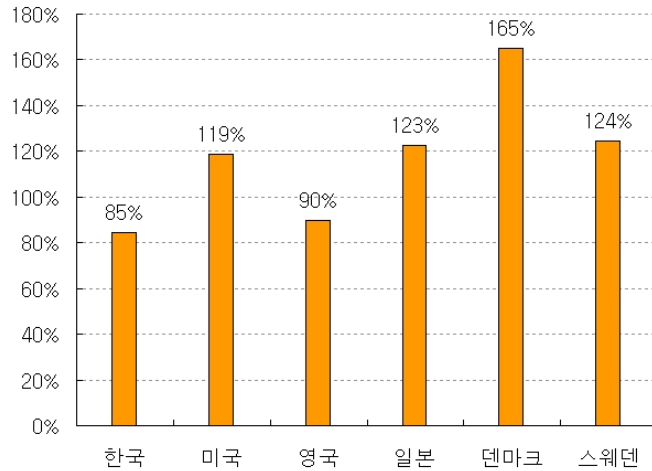
(단위 : %)

연령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농촌 인구비
	농촌	전국	농촌	전국	농촌	전국	
1990	23.6	25.6	67.3	69.3	9.0	5.1	25.9
1995	20.2	23.4	68.1	70.7	11.8	5.9	21.4
2000	18.6	21.1	66.7	71.7	14.7	7.2	21.2
2005	18.4	19.6	63.0	72.4	18.6	9.0	19.9
2010	17.2	17.2	61.4	72.1	21.4	10.7	18.4
2015	15.6	15.3	61.1	72.1	23.3	12.6	17.2
2020	13.9	13.9	60.7	71.0	25.4	15.1	14.8

(자료: 김경덕, 2004)<sup>1)</sup>

- ④ 농촌의 경제활동 기반은 더욱 취약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하락하는 반면, 농가 부채는 급격히 증가해오다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나, 도시와 농촌 간의 상대적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수입 농산물 급증과 과잉생산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대부분의 농촌의 농외취업기회가 제약되어 있다.
- ⑤ 2000년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소득의 비중은 35.5%에 불과하며, 이것은 미국(88.8%), 일본(85.7%), 대만(79.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김경덕(2004)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증장기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계소득평균 대비 국가 간 농가소득 비교>

(자료 : 삼성경제연구원, 2007)<sup>2)</sup>

- 농가소득은 전국가계소득 평균의 88.2%수준(통계청DB, 2003년)
-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24.4%(’85) → 59.0%(’04)
- 35개 군, 771개 읍·면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이상) 진입
- 농가소득(도시가구 소득 비율) : 1.13(’85) → 0.95(’95) → 0.78(’05)
- 의료부문 도시 집중도(’04) : 종합병원(94%), 의료인력(87%)
- 도로 포장률 : (농촌)52%, (도시)90%
- 상수도 보급률 : (농촌)53%, (도시)98%
-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2,420개교(’04)로 농촌에 소재한 5,149개교의 47%

- ⑥ FTA, DDA 등 국제화, 개방화의 진행으로 농업·농촌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WTO 체제 출범이후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국제화 과정에서 한-칠레 FTA(2004), 한-싱가포르 FTA(2006), 한-EFTA(유럽 자유무역연합) FTA(2006)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의 FTA가 2007년 4월에 체결되었다.
- ⑦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DDA가 협상 중에 있으며, 자유무역의 확대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은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삼성경제연구원(2007). 농촌의 新價値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 ⑧ 또한 농촌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 생태환경을 훼손시키는 난개발이 산재한 상태이다.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이 들어서 농촌 고유의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도시 근교의 농어촌지역에서 난개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⑨ 전통문화보전 및 가치 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농촌지역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유산(건축물, 역사적 유물 등) 등이 훼손되어 그 원형과 가치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 3. 도시의 현실

- ① 오염된 환경과 함께 식품첨가물, 농약,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불안이 증대하여 안전한(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실제 현장(농산어촌)을 방문하여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농림수산물 직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② 도시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높은 인구 밀도, 교통체증, 차량배기가스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③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도시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은 도시민들에게 끊임없는 발전을 요구하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인류 최대 질병은 AIDS나 암이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④ 기업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시 퇴근제’ 도입(행자부, 과기부, LG화재 등)과 ‘1사1촌 맺기’를 통해 직원들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⑤ 고소득이나 빠른 승진보다는 저소득일지라도 여유 있는 직장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다운시프트족의 증가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해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 ⑥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부모 동반 여가활동은 여행(48.1%)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국민여가조사), 가족의 휴양과 동시에 자녀들의 체험과 학습을 고려한 형태의 여행이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각종 지역 축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도농교류 현황

- ①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1984년 관광농원사업, '90년대에는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의 틀 내에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주말농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② 2000년대 초반에는 농소정협력사업, 도시민 자본유치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99년부터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공감대 확산 및 도농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농소정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 ③ 2000년대 초부터 다양한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비해 수용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박농가의 숙박환경이 열악하고 체험시설, 특산품 등 농산어촌 마을자원의 관광 상품화가 미흡하며 다양화되지 못하였다.
- ④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촌 가꾸기 추진대책」(2004. 1) 수립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주요과제로 반영(2005. 4) 하는 등 도농교류정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도농상생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 ⑤ 농촌체험관광, 농촌투자유치, 지역개발인력 육성, 도농교류 홍보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투자유치센터(2002. 7)를 한국농촌공사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2004. 4)하였다.
- ⑥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축제, 특성을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는 신활력사업(2005)을 추진하고 있다.
- ⑦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을 농협 등의 민간주도(2004)로 전환하여 농협과 전경련을 공동대표로 하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자발적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⑧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도농교류페스티벌', '도농교류시상'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개(2005~2007)하고 있다.

## 5. 주요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개괄적 평가

### (1) 도농교류협력사업

- ①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농업인에게는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② 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 체험사업”은 도시의 소비자,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농촌생태체험, 농촌일손돕기, 숲가꾸기 및 녹색산촌체험 등을 통해 농업·농촌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험과정에서 제기된 도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농업인들에게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둘째는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사업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토론회, 광고 등의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이 있다.
- ④ 셋째는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으로서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업·농촌의 문화를 보존, 농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선농제향, 자매결연행사, 전통문화공연 등이 있다.

유형	농업·농촌 체험 사업	농업·농촌 알리기 사업	농업·농촌 지키기 사업	농촌폐교공간 활용사업
추진 내용	·청소년 생산 현장 체험 ·농촌 문화 체험 ·일손 돕기 ·도시 소비자 생산 유통현장 및 자매 결연 ·숲 가꾸기 및 녹색산촌 체험	·꿈나무 버 사랑 체험 ·초등학생을 위한 농업 이야기 ·인증농산물 홍보 및 소비기반 확대 ·선농제향	·우리 전통떡지키기 ·농업 환경 보호 ·안전 농산물 소비 촉진	·한문 ·전통예절 ·농촌문화교육 등

- ⑤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 하는 단체 및 기관
  - ▶친환경, 도농교류 등 공익 환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 ⑥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지자체 담당 부서 및 현장 인력의 사업역량의 강화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도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가치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⑦ 사업추진 단체는 전문성은 높은 편이나 소비자 흥미 유발 노력 등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
- ⑧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어린이, 도시소비자 등 각양각층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를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농사 현장 체험 : 청소년 중심 내용 필요
  - ▶전시판매, 품평회 : 치밀한 사업기획(행사장 선정, 홍보 등) 필요
  - ▶농업·농촌 알리기/지키기 홍보 : 국가적 중장기 투자 차원의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육성 필요

**(2) 1사1촌운동**

- ① 1사1촌운동은 2008년까지 '교류성과'를 창출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2~3년여 동안 '교류성과'를 확산시켜 2010년 이후에는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킬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1사1촌운동의 추진으로 단계적 성과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농교류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구분	기간	추진계획
1단계	2006 ~ 2008	교류성과 창출단계
2단계	2009 ~ 2010	교류성과 확산단계
3단계	2010 이후	국민운동정착 단계

- ② 1사1촌운동을 전국의 마을들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전개 외에 중소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서울 등의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역의 농어촌 실정에 밝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1사1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들에 대한 가시적·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1사1촌운동을 사회공헌운동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농간 호혜적 차원의 수익운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농어촌관광마을사업

- ①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관광마을사업은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관광마을사업은 사라져가는 농촌의 정서와 전통적·한국적 가치의 새로운 측면을 되살리고 무형자산을 개발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 ② 제도 및 기반정비 추진체계 표준프로세스는 체험마을 선정요건,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된다. 방문객 수, 농가 매출액 등 주요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동사업은 현재 비교적 우수한 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다.

## 6. 농어촌관광마을의 양적 성장

- ① 1950년대부터 도·농간 소득격차,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그 접근방향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3)</sup>
  - 1단계 :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새마을운동’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마을단위 종합개발
  - 2단계 :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농업 위주의 농촌개발
  - 3단계 : 1990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 부처별 분산적으로 농촌개발
  - 4단계 :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마을단위 사업의 재등장과 함께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라는 테마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핵심 주제로 떠오름
- ② 2000년대 들어서 마을단위 사업들의 등장과 함께 농촌관광, 녹색관광 등의 개념이 마을단위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관광 트렌드가 주5일제의 보편화와 맞물려 마을단위 사업의 주요테마로 자리 잡게 되었다.
- ③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어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및 정보화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농협의 팜스테이 등 농어촌 자원의 활용 가치 증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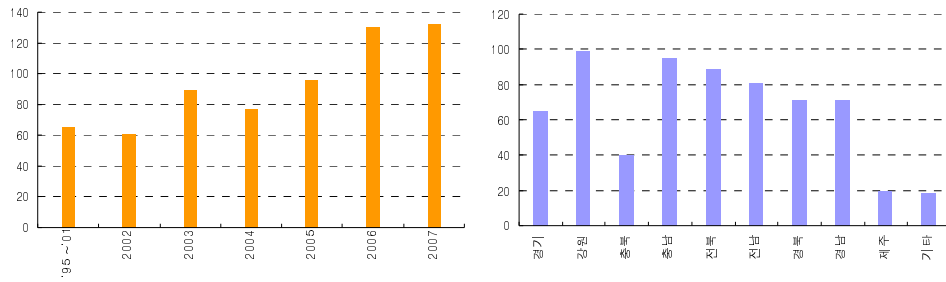
3) 이동필(2000).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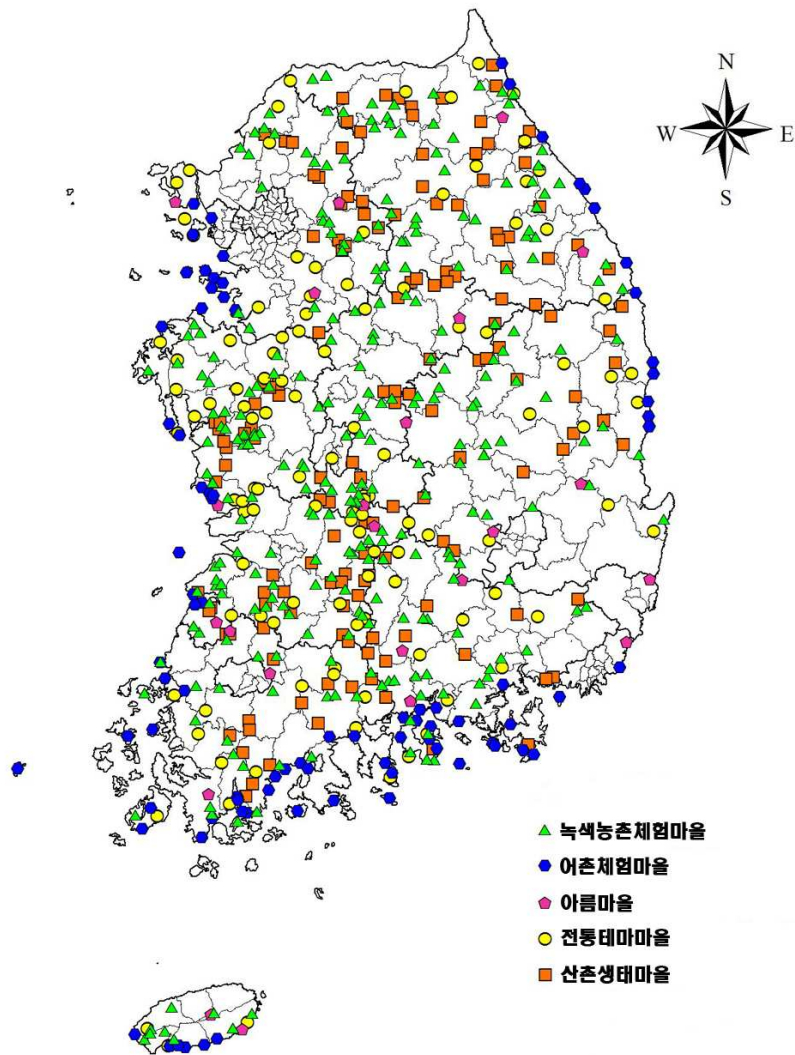
연도	주요흐름	사업내용
1955	마을단위 종합개발	지역사회 개발사업('58), 시범농촌 건설사업('62)
1965		지붕개량사업('67)
1970		새마을운동('70), 소도읍개발 ('72)
1975		불량주택개량사업('76), 취락구조개선사업('76)
1980	농업위주 농촌개발	불량화장실개량사업('80), 입식부역개량사업('83)
1985		도서종합개발('88)
1990	부처별 분산적 농촌개발	오지종합개발('90), 문화마을조성사업('91), 정주권개발('92), 어촌종합개발사업('94)
1995		주택개량사업('95), 산촌종합개발사업('9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96),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97),
2000	마을단위 & 균형발전 농촌개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01), 녹색농촌체험마을('02), 전통테마마을사업('02), 어촌체험마을('0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04),
2005		지역특화사업('04), 지역농업클러스터('05), 전원마을 조성사업('06), 신활력사업('05),

<농어촌관광마을 현황(2007년 12월)>

구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산촌생태마을 (산림청)	아름마을 (행정자치부)	합계
계	274	87	113	153	23	650



<농어촌관광마을 연도별 및 지역별 현황>



<농어촌관광마을 분포도(2007년 12월)>

## II. 도농교류

### 1. 도농교류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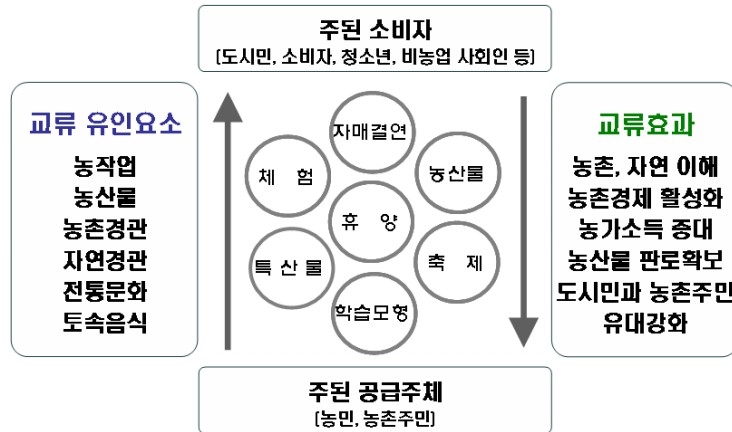
- ① 도농교류는 지역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교류 외에 농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물질 교류까지 포함한 양방향간 상호작용을 말한다.

연구자	도농교류의 개념
이상배 (1995)	상호방문이나 산물의 판매를 위한 거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
김병률 (2000)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매력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결핍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동등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혹은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
송미령 (2003)	사람, 동물,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여러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
한국농공학회편 (2003)	사람, 동물,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도시와 농촌간의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농어촌연구원 (2004)	도시와 농촌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

- ② 도농교류는 그린 투어리즘, 농촌관광, 도농녹색교류, 녹색농촌체험 등과 혼용되고 있는데, 도농교류는 지역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교류에서부터 농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그린 투어리즘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 2. 도농교류의 구성

- ①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라는 교류 주체와 농작업,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 특산물 등과 같은 교류 유인요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 활동 및 과정, 그리고, 교류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② 도농교류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인 교류 주체와 교류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교류주체	농촌공동체	농업자와 비농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농촌 내의 단체로서 각종 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함.
	도시공동체	개개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음.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의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음
교류유인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관</li> <li>• 농촌다움(정서적 요소-소박함, 정다움)</li> <li>• 오래된 문화, 전통, 예술</li> <li>• 체험(농작업, 스포츠, 산림욕)</li> <li>• 먹거리</li> <li>• 특산물</li> <li>• 친절한 응대, 청결한 환경</li> <li>• 여유와 평안함</li> </ul>	

### 3. 도농교류의 유형

- ① 도농교류 유형은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자매결연형은 사회적 교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1사1촌 운동, 제2고향갓기운동, 고향방문행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일손돕기 등이 있다.
- ③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및 특산물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 농촌지역 개발투자 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 ④ 농촌문화교육형은 농촌의 생활문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전통체험교육, 농사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 ⑤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공급과 도시민의 향유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농촌관광형 도농교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촌휴양관광이나 농촌체험관광을 들 수 있다.



- ⑥ 도농교류를 간단히 정의하면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상세하게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들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4. 투자유치 및 정주지원

- ① 민간의 투자유치와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민간의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기본적인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또한 도농교류가 활성화 되면 이러한 투자와 도시민의 농촌정착은 증가하게 된다.
- ② 투자유치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전국의 지자체에서 투자유치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 244건을 살펴보았을 때 관광 및 휴양사업이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산어촌지역의 관광에 대한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농산어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지자체의 투자환경 홍보와 투자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시자본 및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 ③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은 원천적으로 과소화 된 농촌의 현실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포탈 등을 통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III. 법 제정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법률 제정의 추진배경

- ① 농업·농촌종합대책('04.2), 삶의질향상기본계획('05.4)에서 '06년까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업·농촌종합대책('04.2)에서는 농촌관광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촌관광촉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어 삶의질향상기본계획('05.4)에서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제안되었다.
- ②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05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서 「도농교류촉진법(가칭)」 제정을 명시하여,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조성·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였다.
- ③ 또한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05.7.14)에서,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의 근거규정 및 농어촌관광 자격증제도 등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2.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 ① 도농교류 관련법이 여러 부처의 10여개 이상 법률에 산재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산림문화휴양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문화휴양법, 산림기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혼란스럽고 중앙부처간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각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 소관의 법률 및 제도들이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도농교류사업을 뒷받침 할 법률이 미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자원과 인근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거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농촌투자 등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행 법률체계 및 제도상으로는 이를 적절히 연계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③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지역개발 인적자원육성, 농촌투자유치, 농촌정주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법률이 부재하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육성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없으며, 농촌투자는 삶의질특별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도농교류가 결과적으로 농촌정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도농교류 관련 법 현황>

법 률	내 용	비 고
<b>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물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 등 농업관련산업의 육성</li> </ul> </li> <li>◦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li> </ul> </li> </ul>	농림수산 식품부
<b>삶의질향상 특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시책 강구</li> <li>- 경관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주민과 경관보전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에 대한 지원</li> </ul> </li> <li>◦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에 대한 교육·홍보, 친환경농림어업과의 연계, 관광마을의 육성, 자매결연,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 장려에 대한 시책추진</li> </ul> </li> <li>◦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li> <li>-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일부시설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li> </ul> </li> <li>◦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지원</li> </ul> </li> <li>◦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 주민의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활성화사업 지원</li> </ul> </li> </ul>	농림수산 식품부
<b>농어촌 정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대한 정의(제2조 8의2)</li> </ul>	농림수산

법 률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li> <li>◦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에 대한 규정 (제66조 내지 제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휴양자원개발 및 사업의 육성, 조사·연구·홍보시책 추진</li> <li>-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정</li> <li>-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li> </ul> </li> </ul>	식품부
<b>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제21조)</li> <li>- 농어촌휴양지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li> </ul>	농림수산 식품부
<b>농 지 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체험농자에 대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소유 허용(제7조)</li> <li>◦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40조)</li> </ul>	농림수산 식품부
<b>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촌공사업무에 도농교류업무 포함(제24조)</li> </ul>	농림수산 식품부
<b>농업협동 조합 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조합에서 도농교류업무 추진가능(제57조)</li> <li>◦ 중앙회에서 지역조합의 업무지원 가능(제134조)</li> </ul>	농림수산 식품부
<b>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문화·휴양,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정의(제2조)</li> <li>◦ 산림휴양기본계획 수립 등(제4조 ~ 제6조)</li> <li>◦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제도(제7조 ~ 제12조)</li> <li>◦ 자연휴양림인증 및 관리(제13조 ~ 제19조)</li> <li>◦ 산림욕장의 조성(제20조 ~ 제21조)</li> <li>◦ 등산로의 조성관리 및 등산교육, 산악구조대 설치 등(제23조 ~ 제28조)</li> </ul>	농림수산 식품부 (산림청)
<b>국유림의 경영및관리에 관한법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여의 숲제도 도입(제13조)</li> <li>◦ 민관공동 산림사업 시행 가능(제14조)</li> </ul>	농림수산 식품부 (산림청)
<b>해양수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관광의 진흥(제28조)</li> </ul>	농림수산

법 률	내 용	비 고
발전기본법		식품부
어촌어항법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제18조)	농림수산 식품부
자연환경 보 전 법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제12조 ~ 제25조) ◦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제27조 ~ 제29조) ◦ 생태관찰시설 등 설치(제38조) ◦ 생태관광 육성 및 생태마을의 지정(제41조 ~ 제42조)	환경부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지역문화·관광의 육성(제15조)	지 식 경제부

### 3. 법률제정의 필요성

- ①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소득 증대·사회적 활력 증진과 주 5일제 근무실시, 교통의 발달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휴양 수요 등을 충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는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하면서 다른 법률 및 기타 부처와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각 개별 법률에 산재된 조문들로는 도농교류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해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일법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③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으로 분위기조성, 인력육성 등을 통한 지역의 수용체제 구축, 교류사업(체험·휴양, 투자유치 등)의 3자가 함께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각 부문의 민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 ④ 구체적인 도농교류사업, 즉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휴양, 도시민·도시자본의 투자유치, 도농자매결연, 도농교류 전문인력 육성, 농촌정주지원 등과 같은 사업의 근거법률이 없거나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어 법률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어촌체험·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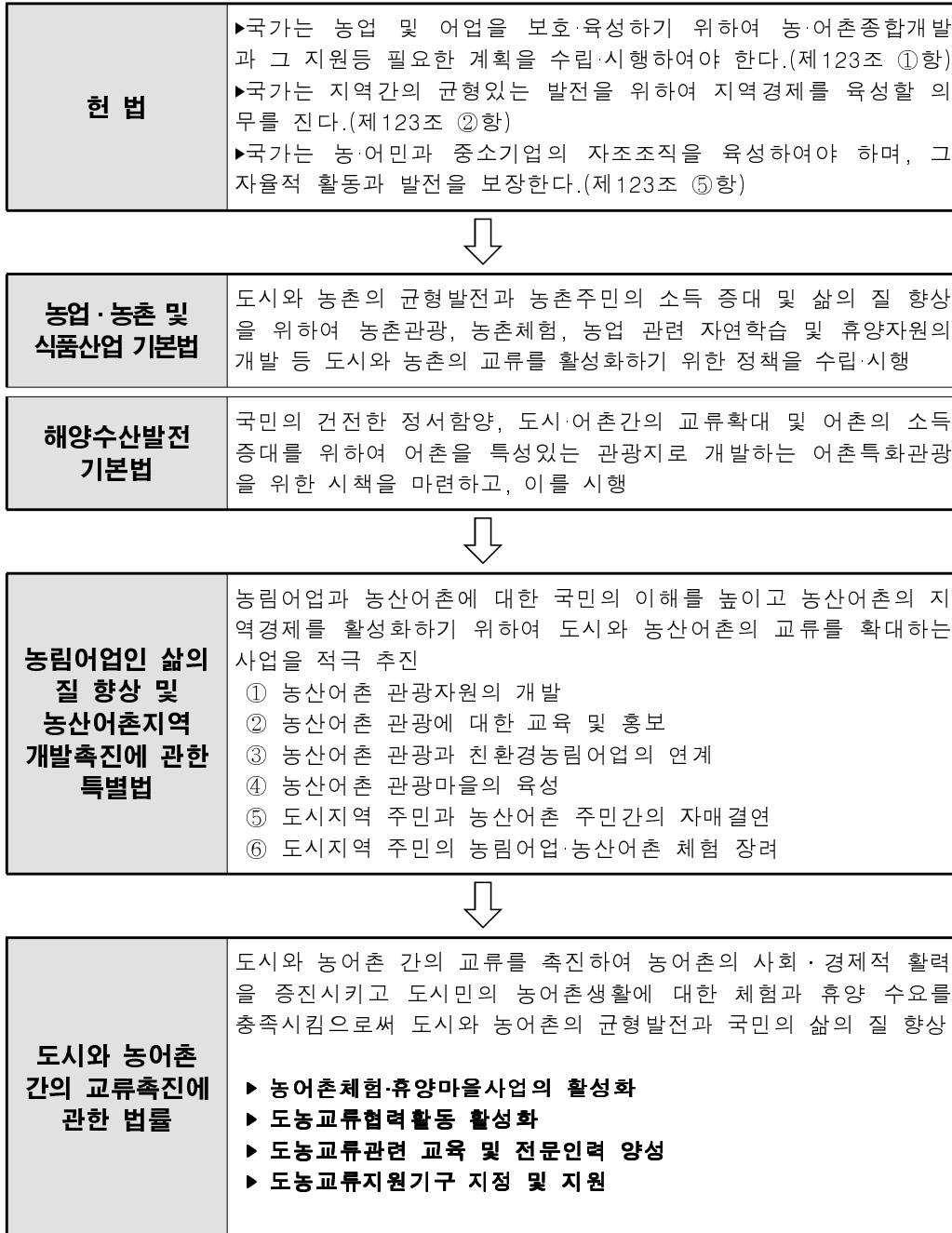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별도 업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제기 빈발하다.
- 물적기반(하드웨어) 조성에 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선언적 성격으로는 삶의질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포괄적인 도농교류관련시책이 없으며,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시행절차를 담고 있지 않다.

▪ **전문 인력양성,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활성화시책 마련 등 :**

- 「삶의질특별법」에서는 일부 선언적 규정과 도농교류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농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농촌지역의 전문인력 및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활성화시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⑤ 기존 법률의 개정은 절차상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90년대 후반부 터 본격화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 붐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몇몇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향식으로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의 지역휴양사업 경쟁력 강화노력과 민간기구 및 단체의 활성화 분위기를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부처에 산재한 도농교류 촉진기능은 혼란과 책임만을 가중시킬 뿐 도농교류 체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⑥ 새로운 입법의 대안으로 「농어촌정비법」 및 「삶의질특별법」 등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의 물적 기반을 갖추는 사업에 대한 규정만 두는 것이 법 목적상 타당하며, 「삶의질특별법」도 도농교류관련 시책을 모두 포함할 경우 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 ⑦ 농촌체험·휴양,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농촌정주지원과 도농교류 전문인력양성 등 도농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4. 법의 체계



## IV.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제정이유

-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농어촌에는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증진하고, 도시민의 휴양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2. 추진경과

-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에서 2006년까지 도농교류촉진제도 마련보고 (농림부장관→대통령)
-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법률초안 마련(2004.3~2005.12)
- 유선호의원(대표발의) 등 의원30인 「도농교류촉진특별법」 제정 발의(2006.3.6)
- 「도농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입법 추진계획을 대통령 보고 (2006.6)
- 각 시도, 농업인단체 등과의 토론회 개최 (2006.9.28)
- 정부 각 부처 의견조회 (2006.12.28 ~ 2007.1.10)
- 농특위 주관 제정법(안)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2007.2.28)
- 입법예고 (2007.4.6 ~ 4.26)
- 법제처 심사 (2007.7.18 ~ 10.1)
- 차관회의 (2007.10.4), 국무회의 (2007.10.9)
- 국회제출 (2007.10.12)
- 법률안 제정·공포 ('07.12.21) <법률 제8751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08.6 월말)

### 3.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

① 법률의 기본체계는 목표, 기본이념, 정책과제, 정책수단, 정책추진체계 등 크게 5가지로 대별된다.

<b>목 표</b>	⇒	<b>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b> ◇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 도시민의 자연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휴양수요 충족
<b>기본이념</b>	⇒	◇ 도시와 농어촌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도농상생 도모
<b>정책과제</b>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 도농교류협력활동 활성화 ◇ 도농교류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b>정책수단</b>	⇒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운영지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의 평가 ◇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제도 운영 등 ◇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 제공 등 농어촌정주 지원 등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b>정책추진체계</b>	⇒	◇ 농림수산식품부 :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 총괄 및 지원 ◇ 지자체 : 정책수단 세부시행방안 수립 및 시행

#### 4. 「도농교류촉진법」의 제정방향

도시와 농어촌의 지속적 교류촉진을 통한 농어촌 사회·경제적 활력증진과 도시민의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의 길 모색

#####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농교류촉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주민과 도시민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
  - 1. 농어촌 체험·휴양 활성화
  - 2. 도농교류협력활동 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지원
  - 3.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
  - 4.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 ○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사업 시행근거 마련

- 자연경관, 특산품등을 활용한 농어촌 체험·휴양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 배제 등 특례부여

##### ○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전문인력양성 방안 마련

- 도시민의 농어촌정주를 위한 다양한 농어촌정주 지원방안 마련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 5. 「도농교류촉진법의 구성

### ▣ 주요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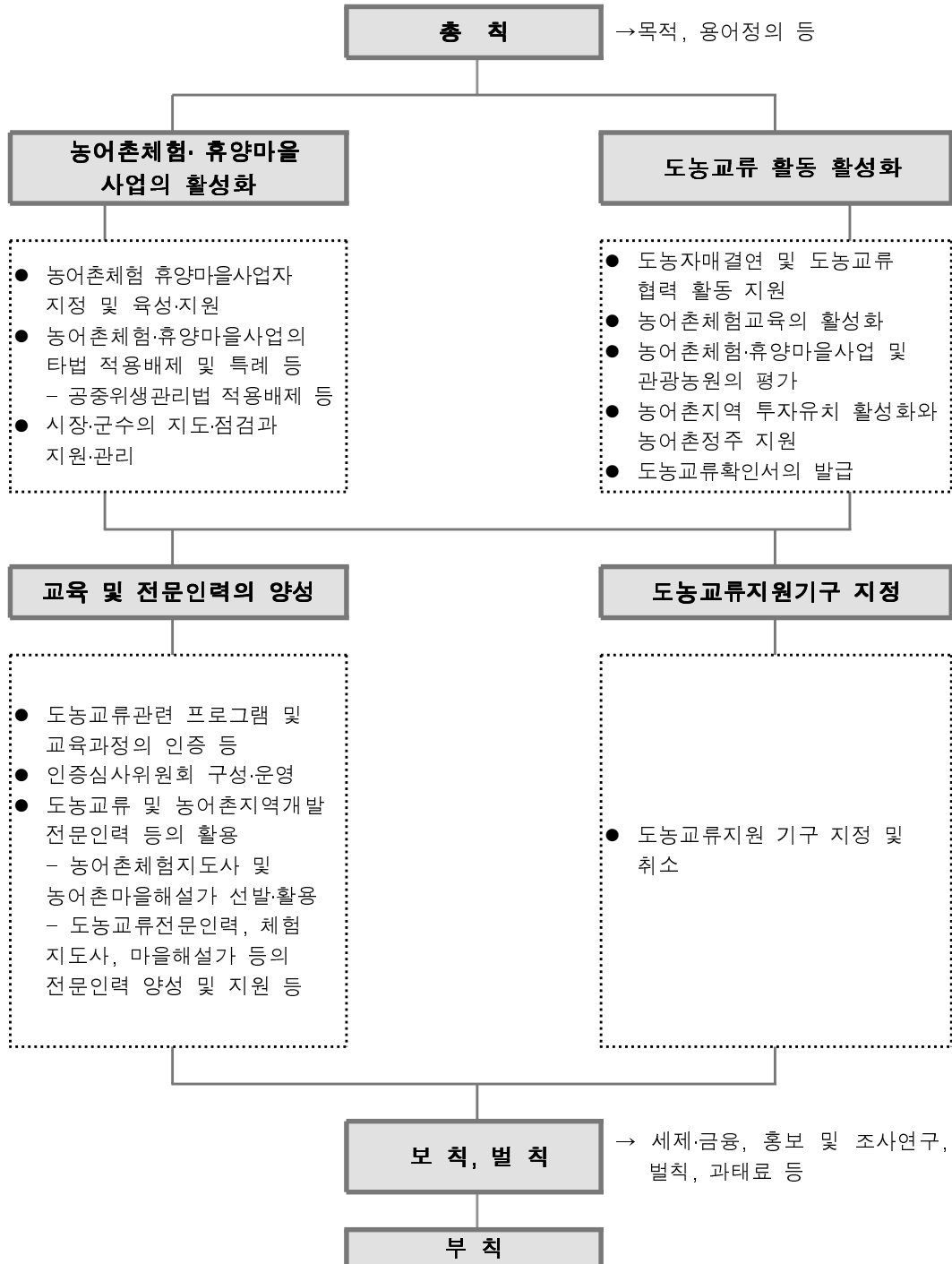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골 자	조 문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의 지정 및 육성·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홍보, 도시민 유치, 기반정비, 보험 또는 공제, 경영지원, 조사·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법제5조~ 법제6조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	시장·군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 개선명령, 사업정지 및 사업최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법제7조, 법제11조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의 타법 적용배제 및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의 적용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법제8조~ 법제10조
도농교류활동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12조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및 관광농원 평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법제13조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국가 및 지자체는 유치원의 원아 및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법제14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농어촌마을에 대한 기부와 체험 및 봉사활동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확인서 제도를 도입함.	법제15조

구분	주요 골자	조문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농어촌 정주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지역 사업 투자 및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을 하여야 함. 또한 도농교류센터에 농어촌지역 투자유치의 지원 기능을 부여함.	법제16조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도농교류·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 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 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촉진하고 수준 높은 교 육과정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17조~ 법제19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활용	도농교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선발하 여 농어촌지역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자문,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의 지도, 농어촌마을의 역사 전통·문화 해설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함.	법제20조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확대, 농어촌 투자유치와 도 농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21조~ 법제22조

▣ 제정내용에 따른 조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	법제5조 ~ 법제10조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법제12조 ~ 법제16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법제17조 ~ 법제20조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	법제21조 ~ 법제22조

▣ 구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조	도농교류촉진법 내용	위임법령	
		대통령령	농식품부령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	
7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
8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숙박서비스시설의 규모	√	
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에 적용배제 되는 승마장의 규모	√	
10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	√	
1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	√	
12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도농교류활동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
1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
15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
17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표시 및 인증신청 절차		√
18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1	도농교류활동 전담부서 유무,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등 도농교류지원기구의 기타 지정요건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사항	√	
24	준농어촌지역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지원조건	√	
25	농업·농촌 관련 홍보·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절차 및 지원방법		√
2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시행령 주요내용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등(제2조 및 제3조)** : 이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단위 체험·휴양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 ②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제10조)** : 이는 초·중등 학생이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도농교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의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초·중등 학생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도시민의 농어촌이주 및 정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제11조)** : 도시민이 농어촌에 이주하고 싶어도 농어촌 이주에 따르는 준비 사항, 방법 등의 정보 부재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정주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제공, 컨설팅,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④ **민간 차원의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제12조)** : 지정요건으로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시행규칙 주요내용

- 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정제도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제2조 및 제3조)** :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내용으로는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및 변경지정 시 필요한 절차와 관련서류 등이 있다.
  
- ⑥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안전·위생 교육 등의 시행기준(제4조 및 제5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공중이용시설 종류 별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음식점판매,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⑦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제8조)** : 학생 또는 도시민 등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등에서 기부 혹은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기부·봉사 활동의 확인으로 교외체험학습 인정을 위한 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를 담고 있다.
  
- ⑧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안 제9조 및 제10조)** : 농어촌지역의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기준과 신청·발급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다. 이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등을 제시하여 도농교류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우수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V. 입법례

### 외국의 도농교류관련법 입법례

구 분	법 제
프랑스	<p><b>•농업적응법(198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상의 우대(사회보험료 우대)</li> <li>·농가의 관광객 숙박수입을 농업활동과 동일한 형태의 수입으로 인정함</li> <li>·관광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15만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부과를 50% 감면</li> <li>·관광관련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농가의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20만 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농업수익에 관광관련 수입을 함께 계상</li> <li>- 시설개선을 위한 저리융자(PAM)</li> <li>·지원액 금액은 농가당 2인에 한해 1인당 최대 47만 프랑까지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li> </ul> <p><b>•농업근대화법(199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이 농촌관광을 하는 농가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 및 보조금(청년농업인보조금)을 지급</li> </ul>
일본	<p><b>•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 시민농원의 정비 등 추진 의무 규정(제36조)</li> </ul> <p><b>•농산어촌체재형여가활동을위한기반정비촉진에관한법률(199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제2조)</li> <li>·농촌체재형 여가활동, 산촌·어촌체재형 여가활동, 농작업체험 시설, 농림어업 체험민박업 정의(제2조)</li> <li>- 도도부현에서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능정비 기본방침 수립(제4조)</li> <li>·기능정비지역(정비지역) 설정</li> </ul>

구 분	법 제
	<p>·농작업 체험시설, 산촌·어촌체재형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기능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촌 계획(제5조)</li> </ul> <p>·기본방침에 따라 정비지구의 구역설정, 토지이용, 기타 시설정비 등에 시정촌계획 포함내용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의 체결, 변경, 인정취소 등(제6조~10조)</li> </ul> <p>·시정촌 정비지구내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토지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 및 정부지원(제11조~15조)</li> </ul> <p>·농용시설정의 특례, 정부자금지원 등 특례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농림어업 체험민박업 협회지정·관리(제16조~23조)</li> </ul> <p>·협회지정, 업무, 영업인가, 지정취소 등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도부현 단위의 농림어업체험민박단체 지정(제24조~26조)</li> <li>- 협회 및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제27조~29조)</li> </ul> <p>·보고 및 출입검사, 청문, 국가의 원조 등 규정</p> <p><b>·구조개혁특별구역법(200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혁특구의 유형에 도시농촌교류관련특구 포함</li> </ul> <p><b>·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등 및 지역간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제1조)</li> </ul> <p>·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등에 의해 농산어촌의 활력이 저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산어촌 정주등 및 농산어촌과 도시간의 지역간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제2조)</li> </ul> <p>·정주, 지역간교류 등에 관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방침(제4조)</li> </ul> <p>·정주등 및 지역간교류 촉진에 의한 농산어촌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계획(제5조)</li> </ul> <p>·정주등 및 지역간교류촉진에 의한 농산어촌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작성</p>



구 분	법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금(제6조)</li> <li>·농림어업단체 등이 활성화계획에 근거한 사업등의 실시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부담</li> <li>- 제7조 (소유권이전등촉진계획) 등</li> <li>·활성화계획을 작성한 시정촌이 농림지소유권이전등촉진사업</li> <li>- 제12조 (국가등의 원조등)</li> <li>·활성화계획에 근거한 사업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등의 확실하고 효과적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그 밖의 원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독 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촌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없음</b></li> <li>- 연방건축기본법, 공업법, 음식업종관련법, 세금법, 노동법, 위생관련법에서 도시지역과 똑같이 농촌관광산업에 적용</li> <li>◦<b>자연보호및경관보전법, 농촌정비법</b></li> <li>-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규정</li> <li>◦<b>농가민박 품질보증마크제도 운영</b></li> <li>- 품질보증마크는 최초 교부일로부터 3년간 사용이 인정되며, 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3년마다 재심사에 합격해야 함</li> <li>- 독일관광연맹(DTV)이 독일농업협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홍보하고 있음</li> </ul>

▣ **각 국가별 전통과 역사에 따라 법제화 방식이 다양함**

- 일본은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등은 관련법령에서 포함시켜서 규정·지원
- 프랑스는 개별법령에서 다소 자세하게 규정함
- 일본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단위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나, 프랑스·독일 등은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방식 채택
-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은 농촌관광사업을 하는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모든 국가에서 농가민박을 아주 중요한 정책분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규정이 존재함**

- 농가민박을 통한 수입을 농업활동과 관련한 수입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 및 시설개선 등 지원(프랑스)
- 농가민박에 대한 등급화 및 품질보증마크제도를 운영(독일)
- 농가민박과 관련한 전국단위의 협회의 지정 및 지원(일본)

▣ **우리나라의 도농교류는 추진주체 및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으므로 유럽과 일본방식을 병합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 농촌체험관광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과 같은 개별경영체 방식과 농산어촌체험마을 등 공동추진방식이 존재
- 사업유형도 주말농원, 관광농원, 마을단위체험·휴양, 대단위 휴양지 개발, 특구 지정 등 다양화 되는 추세임

## 제 2 부



## 도농교류촉진법 내용

# 제1장 총 칙

## ■ 목 적(제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 개 요

- ① 본조는 법의 정책적 목적을 밝히고 있다. 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35조, 제36조를 구체화하여 농어촌 체험·휴양 및 도농자매결연 등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 ② 또한 농어촌지역에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동시에 도시민의 농어촌체험·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어촌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목적이다.

목 적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촉진</li> <li>· 지역경제 활성화</li> <li>· 삶의 질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li> <li>· 도농교류활동 활성화</li> <li>·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li> <li>·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li> </ul>

## II. 재정목적의 구체적 고찰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정의 제도화

- ① 2007년 12월 기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 어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정부사업으로 지원·육성하는 농촌관광마을이 약 600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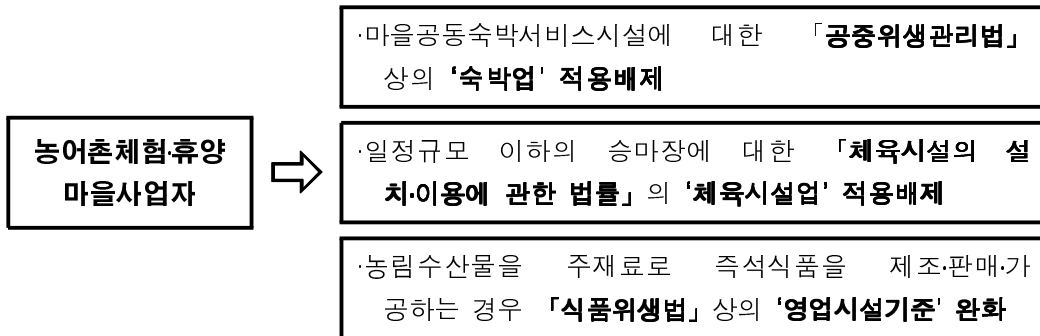
가 존재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에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제를 통해 기존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육성되었던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운영·관리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관광마을 현황(2007.12월)>

구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산촌생태마을 (산림청)	아름마을 (행정자치부)	합계
계	274	87	113	153	23	650
경기	29	8	9	17	2	65
강원	44	7	14	32	2	99
충북	18	0	7	13	2	40
충남	45	7	23	18	2	95
전북	41	4	18	24	2	89
전남	23	26	14	16	2	81
경북	33	7	9	20	2	71
경남	30	16	10	13	2	71
제주	9	6	3	-	2	20
부산	-	2	-	-	1	3
인천	-	4	4	-	1	9
대구	-	0	1	-	1	2
광주	-	0	-	-	1	1
대전	1	0	1	-	-	2
울산	1	0	-	-	1	2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시장·군수의 사업자에 대한 지도 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용자들의 안전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안전·위생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③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정의하고 마을에서 동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④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배제 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완화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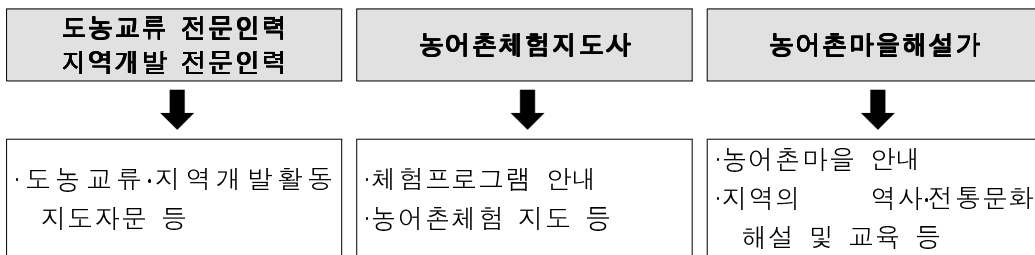


## 2.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 ① 도시민·소비자단체에 대한 농어촌현장체험 등 도시민의 농어촌 이해 증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활동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민·소비자단체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체도를 도입하였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체험·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 ③ 농어촌마을에서 초·중등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이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어촌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수립 근거를 두었다.
- ④ 농어촌마을에 대한 기부와 체험 및 봉사활동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확인서 체도를 도입하였다. 기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그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체험 및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마을의 이·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가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 ⑤ 농어촌 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3.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도농교류·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촉진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4.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

- ①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확대, 농어촌 투자유치와 도농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좀 더 창의적이고 유동적이며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아이템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과정에서도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이렇게 지정된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도농교류협력활동,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 기타 도농교류활동 관련한 사업 등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받은 도농교류지원 기구 단체가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체계로 본 「도농교류촉진법」의 필요성

<b>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b>	이 법은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b>산림기본법</b>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b>해양수산발전 기본법</b>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b>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b>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b>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b>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관련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교육·주택·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1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전통식품산업·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2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2.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4.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5.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6.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체험 장려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 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정 의(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4. “마을”이란 농촌 또는 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정사유

-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해석상의 오류방지과 용어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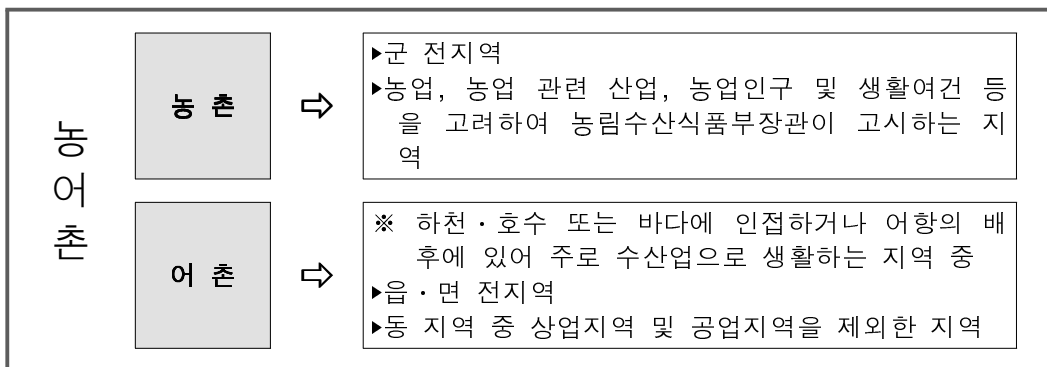
## I. 개 요

이 조에서는 농촌, 어촌 및 농어촌, 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사업자, 관광농원, 농어촌정주지원, 도농교류, 도농자매결연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 II. 용어 정의

### 1. 농촌, 어촌, 농어촌 정의

- ① 이 법에서 농촌과 어촌, 농어촌의 정의는 상위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어촌의 정의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에서 군의 전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군 이외의 지역 중에는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③ 「어촌어항법」에서는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거나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 중 모든 읍·면 전 지역과 동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 ※ 시의 지역 중 농어촌지역 고시 원문

<농림부 1995-86고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어촌지역을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10월10일

농림수산부장관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은 전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4)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

## 2. 마을의 정의

- ① 사전적인 의미의 마을은 농어촌에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며, 주로 농림업·수산업·목축 등과 같은 제1차 산업에 의해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마을은 도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며, 교리(郊里)·동리(洞里)·방리(坊里)·방촌(坊村)·이락(里落)·이항(里巷)·촌(村)·촌락·촌리·향보 등 같은 의미의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다.
- ② 이 법에서의 마을의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와 구의 동과 읍·면의 리 중에서 “농어촌”에 포함되는 동·리를 말한다.

### <법정동·리>

-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지방자치법」 제3조3항)

### <행정동·리>

-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 (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조5항)

##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사업자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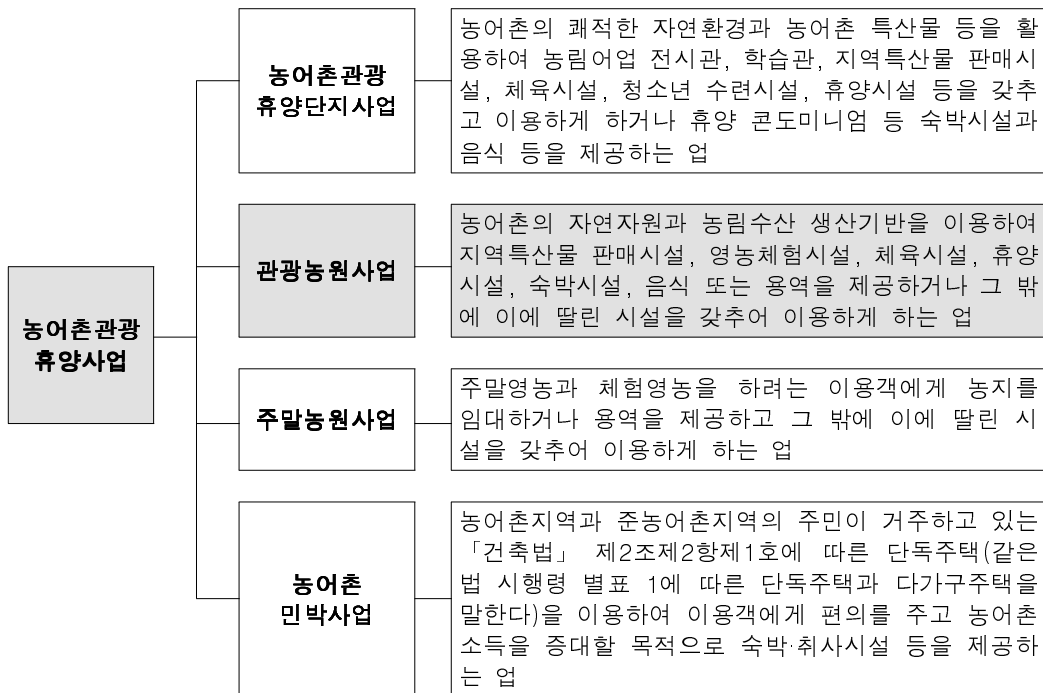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농림수산물, 특산품 등 다원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농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4) 「도시계획법」이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 즉,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해석됨.

- ② 광의적으로는 녹색농어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농촌테마마을(농촌진흥청), 아름답마을(행자부)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이지만, 법상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 절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지정받은 마을을 의미한다.
- ③ 마을단위의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은 사업주체가 마을공동체이며 마을공동시설을 활용 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과 구분된다.
- ④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리 단위에 포함된 마을 주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 4. 관광농원사업의 정의

- ① 1983년 12월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농공지구를 개발하는 등 획기적인 농외소득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환으로 농림부가 1984년에 12개 관광농원 개발 시범지구를 조성하면서 관광농원사업은 시작되었다.



- ② “관광농원사업”의 정의는 「농어촌정비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관광농원 사업이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로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한다.
- ③ 관광농원사업 이외에도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이 정의되어 있다.
- ④ 관광농원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 본연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영농 체험활동, 자연학습, 휴식, 체육활동 등에 활용함으로써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기위한 정책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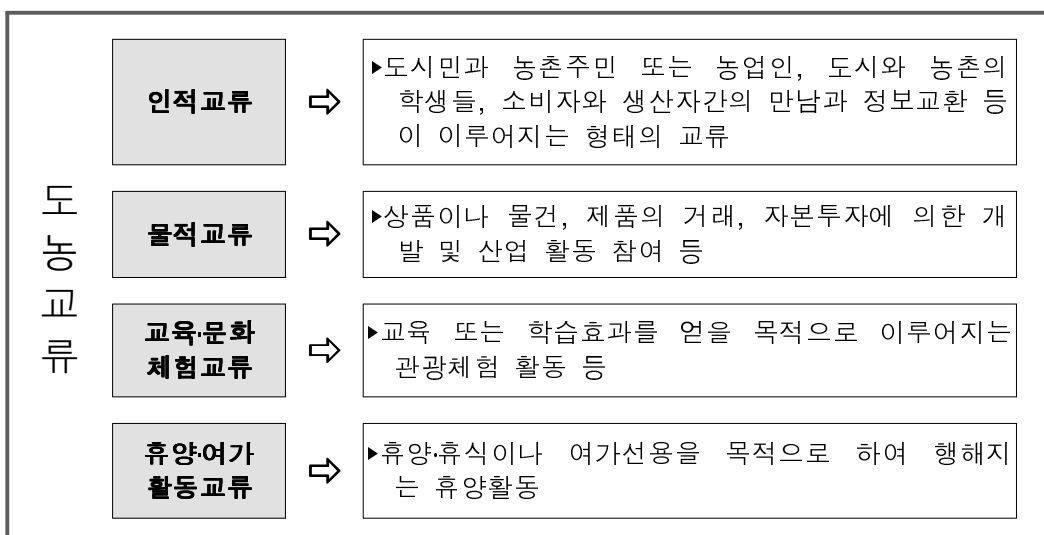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li> </ul>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li> <li>◦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간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li> <li>◦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li> <li>◦ 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 등 영농체험시설을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li> </ul>
근거법령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사업대상자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규모 : 100,000㎡ 미만</li> <li>◦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li> <li>※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li> </ul> </li> <li>◦ 자유편의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li> </ul>

		<p>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p> <p>·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p> <p>·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 시설 설치의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p>
유형	기능별	자연 학습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농촌휴양형, 효도농원형
	운영별	농산물채취형, 생산수단대여형, 장소 제공형

## 5. 도농교류, 도농자매결연의 정의

### (1) 도농교류

- ① 도농교류는 지역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교류 외에 농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물질 교류까지 포함한 양방향간 상호작용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는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이라 정의하고 있다. 도농교류를 정의하려는 목적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및 물질 교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개념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 ③ “도농교류”는 대상에 따라 인적교류와 물질 교류 및 서비스 교류로 크게 나뉘며, 다시 서비스 교류를 교육·문화체험활동과 휴양·여가활동으로 나누어 총4가지로 분류된다.

(2) 도농자매결연

- ①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 ② 자매결연은 도시의 기업(또는 단체) 등이 농어촌마을과 교류의 약속관계를 맺어 도시와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도·농교류의 주요 실천사업으로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업지원 등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하였다.

**6. 농어촌정주지원의 정의**

- ① “농어촌정주(定住)”란 사전적 의미로는 “농어촌에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뜻”으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둘째는 향후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이다.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용어는 후자로서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주지원 추진현황 및 방향>

구분	2006	2007	2008 이후
정주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단위 주거공간조성 55개소</li> <li>◦기존마을정비 96개소</li> <li>◦숲가꾸기사업 54만 ha완료</li> <li>◦농어촌경관지표추진 방안 마련</li> <li>◦모델마을조성 착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단위 주거공간조성 80개소</li> <li>◦기존마을정비 136개소</li> <li>◦숲가꾸기사업 77만 ha완료</li> <li>◦농어촌경관지표 마련 및 관련법제화 추진</li> <li>◦중심마을(면소재지) 종합개발 시범 추진</li> <li>◦모델마을조성 완료 및 도시민 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 이주수요를 감안, 사업물량 확대</li> <li>◦기존마을정비 1,065개소</li> <li>◦'08년까지 숲가꾸기사업 100만ha완료</li> <li>◦농어촌경관보전협약 대상범위 확대</li> <li>◦중심마을 종합개발사업확대</li> </ul>

구분	2006	2007	2008 이후
<b>이주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시물레이션 서비스 제공</li> <li>◦농어촌정착자금 지원 조건개선 및 확대</li> <li>◦마을·지역 발전 계획 수립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종합정보포털의 내용보완 및 기능개선</li> <li>◦마을·지역 발전 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종합정보포털의 내용보완 및 기능개선</li> <li>◦마을·지역 발전 계획 수립 시범사업 확산</li> </ul>

구분	2006	2007	2008 이후
<b>추진체계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협약제도(안)마련</li> <li>◦시·군단위 농어촌복합 생활공간 종합기획체 제 구축</li> <li>◦농어촌복합생활서비스 맵 연구 및 방안마련</li> <li>◦농어촌통계확충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협약제도법제화 - 협약제도 시범추진</li> <li>◦서비스맵 구축추진 - 자료조사, 연구 등</li> <li>◦농어촌 통계확충 - 도시, 농어촌 구분발 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협약제도 활성화</li> <li>◦서비스맵 구축완료 및 운영</li> </ul>

② 현재 도시민의 농어촌정주지원을 위하여 크게 정주공간조성, 이주단계별지원, 추진체계 정비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농어촌정주지원에 대한 정의를 내린 목적은 농어촌의 정주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 등 법 집행에 있어서 혼란 방지와 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7. 기타 정의

- ① 법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법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가구”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 ▶“공중이용시설”이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이용되는 체험전시관, 학습관, 마을공동숙박서비스시설, 체험시설, 그 밖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관련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 어촌·어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의 상호교류촉진으로 농어촌에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의 다원적 자원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체험·휴양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협력활동 활성화, 도시민의 농어촌정주 지원, 농어촌투자 활성화 지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
- 이러한 종합적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다른 법과의 관계(제4조)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정사유

- 도농교류촉진에 관하여는 현재 다수의 법령들에서 복잡하고 산만하게 규정하고 있는 도농교류촉진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확보가 필요가 있다.

##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5조)

####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립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의하고 지정제를 도입하여 기존 정부에서 지원·육성하고 있는 관광마을을 공식적 업종으로 제도화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체험·휴양마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신청자와 지정자의 행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I. 개요

이 조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그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이 마을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하면 시장·군수등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토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 ① 제1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 및 지정 주체와 지정신청 시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제2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 시 시장·군수등이 취해야할 절차 등의 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 ③ 제3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II. 농어촌관광마을 현황

### 1. 사업별 현황

- ①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어촌체험마을(이상 농림수산식품부),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산촌생태마을(산림청), 아름마을<sup>5)</sup>(행자부) 등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정부사업으로 지원·육성하는 농어촌관광마을이 약 60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 ② 앞에서 언급한 5가지의 정부지원 사업은 농촌관광마을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위 다섯 가지 사업 이외에도 농촌관광마을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사무장 채용사업, 농어촌민박사업, 팜스테이 등이 있다.

5) 2001년 9개, 2002년 14개 총 23개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 ③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과 추진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농촌관광과 연계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화마을사업 또한 농촌마을의 정보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농촌관광마을의 홍보와 농림수산물 판매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농촌관광마을에 관리인력을 지원해주는 사무장 채용사업과 개별 농가에게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민박사업, 그리고 민간인 농협에서 지원하는 팜스테이 등이 있다.

<농어촌관광마을 현황(2007년 12월 기준)>

구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산촌생태마을 (산림청)	아름마을 (행정자치부)	합계
계	274	87	113	153	23	650

## 2. 사업목적

- ① 현재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는 농어촌관광마을 사업의 목적은 각각의 사업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로 친환경 농어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활성화와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에 기여하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사업계획 및 내용

- ①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은 '13년까지 총 685개소 조성을 목표로 마을당 2억원 수준(국고50%, 지방비 50%)으로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 ② 어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대상 자격은 어촌마을로서 '13년까지 112개소를 목표로 마을당 5억원(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 수준으로 어촌체험마을의 관광기초기반시설과 주민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 하고 있다.
- ③ 산촌생태마을(산림청)의 사업대상 자격은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마을로서 '13년까지 335개소를 목표로 2년간 마을당 10억~16억원(국고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소득기반, 생활환경개선 에 사용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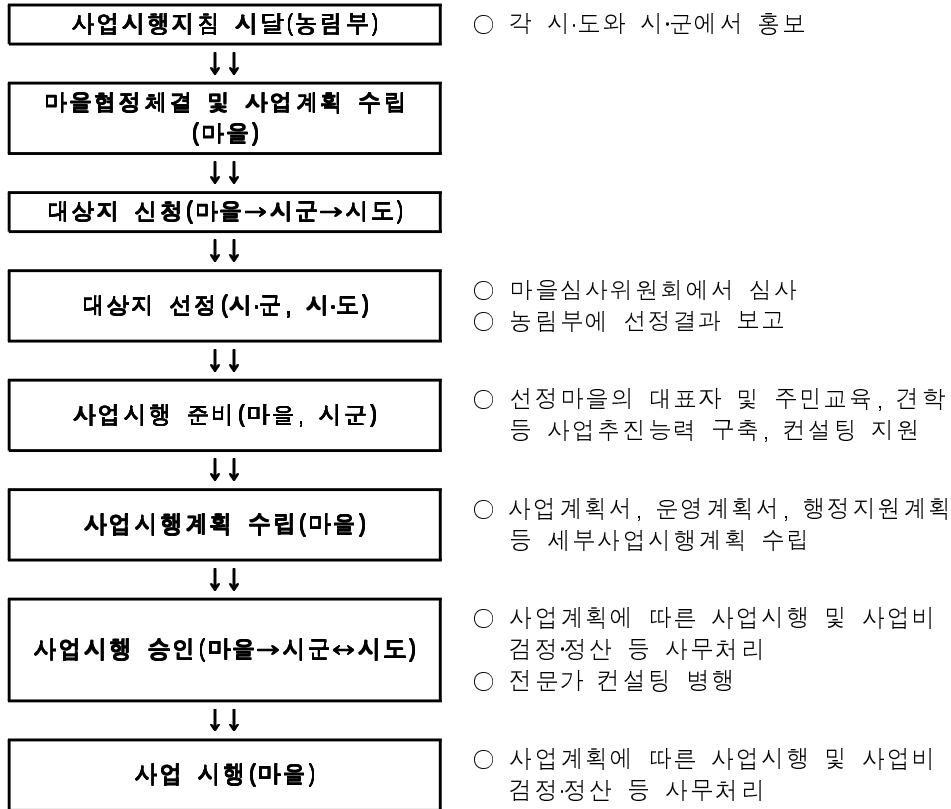
- ④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의 사업대상 자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전체로서 2009까지 160개소를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을당 연간 1억원 수준(국비 50%, 지방비 50%)으로 2년간 마을 주민교육·견학, 시설 및 장비, 홍보, 마케팅, 건설팅 등 전통테마마을 육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⑤ 아름마을은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2001~2002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23개 마을에 추진되었다.

#### **4. 사업추진체계**

- ①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고 시장·군수는 대상마을 요건, 선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을 하여 시·도지사가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추진절차>



- ②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선정 지도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촌생태마을은 사업추진 희망 산촌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시·군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예비활동마을을 선발한 후 산림청장이 중앙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한 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다.
- ④ 어촌체험마을은 시·도(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대상마을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III.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여 추진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어

촌체험마을 등의 “농어촌관광마을”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정부지원에 의해 추진된 관광마을이라 할지라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려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원 절차에 의해 사업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성격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의미하며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성격을 지닌다.

### ▪ 민법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 법인세법 제1조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요건

- ① 마을 전체 가구의 과반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추진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② 마을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어야 한다.(다만, 마을의 인구 수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b>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b></p>	<p><b>농업인</b></p>	<p>⇒</p> <p>&lt;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li> <li>▶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ul>
<p><b>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b></p>	<p><b>어업인</b></p>	<p>⇒</p> <p>&lt;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li> <li>▶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li> </ul>

- ③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지자체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절차



(2) 시장·군수등이 지정 시 공고사항

- ① 지정 연월일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③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④ 사업 개요

####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1)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① 마을협의회 대표자의 변경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변경
- ③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 ▶승마장 운영
  - ▶음식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2) 변경지정신청 시 제출 서류(※별지 4호서식과 함께)

-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 미동의 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6조)

###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사유

- 우리나라 농어촌마을의 고령화와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볼 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이를 스스로 운영할 자립여건을 가질 때까지 국가차원의 체험·휴양프로그램 개발, 기반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르는 예산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1. 개요

이 조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한 생활체험·휴양자원개발, 도시민 유치 활성화, 기반정비, 경영지원, 조사·연구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정책의 종류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① 제1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정책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다.
- ② 제2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③ 제3항은 국가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정보제공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 II.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 1. 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 시행)

<p>&lt;법 제6조제1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 자원의 개발</li>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li>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li>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li>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li>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li> </ul> <p>&lt;영 제3조제1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ul>
--

### 2. 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p>&lt;법 제6조제2~3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 및 지자체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li>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국가 ⇒ 지자체 )</li> </ul>
---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제7조)

###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 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성실한 사업수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객들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준수도 중요하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외에 사업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더해질 때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다.
-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선명령 및 조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에서 방문객의 건강과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시설의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안전·위생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전·위생교육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제1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 ② 제2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③ 제3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그 밖의 지정 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④ 제4항은 시장·군수등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 II.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 1. 시장·군수등의 의무(법 제7조제1항)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7조제2항)

- 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4조 별표1)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폐 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 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p>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p> <p>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p>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p>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p> <p>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추는 것</p> <p>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p> <p>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p> <p>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p> <p>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p>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 시설	<p>○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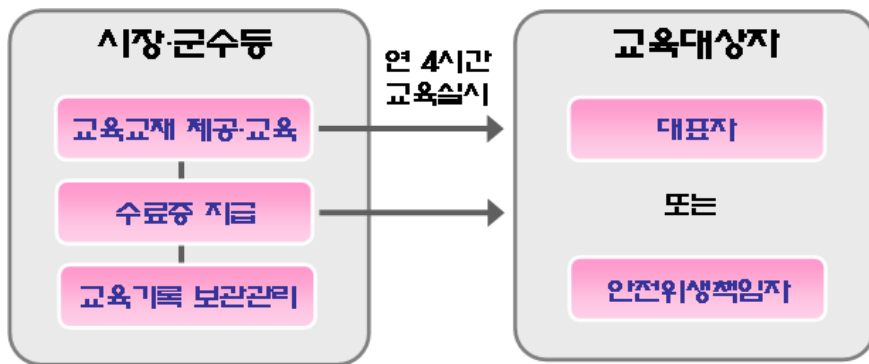
### 3.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위생을 위한 개선명령

- ① 시장·군수등은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정 요건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② 시장·군수등은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 ③ 개선명령 시 대표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
  - ▶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 ▶ 개선기간
  - ▶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 4. 안전위생 교육 실시(시행규칙 제5조)



- ① 교육대상자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
- ② 교육시간 : 연 4시간
- ③ 시장·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등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등은 안전·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등은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제8조)

###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정사유

- 체험마을에서 공동숙박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련 규정에 적합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숙박의 양태가 비상시적이며 개인적인 상업목적이 아닌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체험마을이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풍습이 반영되어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따라서 농어촌의 실정 및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숙박영업 시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중의 위생과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 역시 중요하므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사업자 및 마을공동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숙박서비스 제공시 숙박업으로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②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숙박업은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③ 따라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험마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풍습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의

양태가 비상시적이고 영세적이라는 점에서 각 개별법에 따른 영업신고 및 기준 등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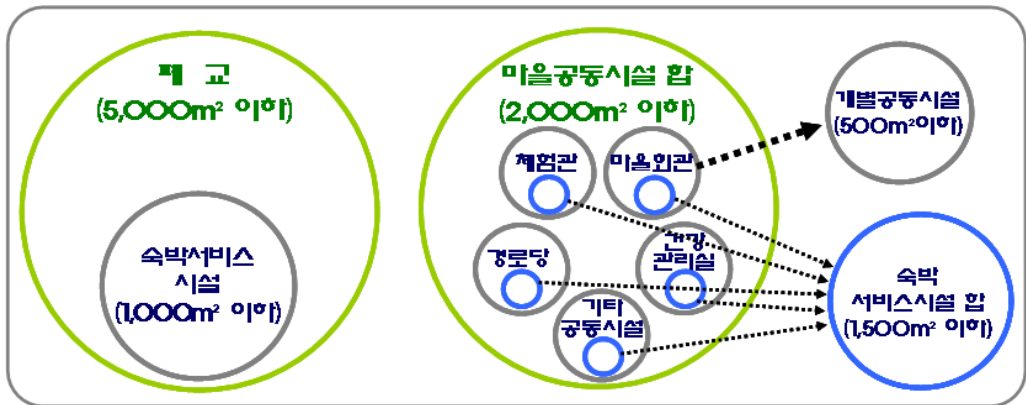
- ④ 이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공동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이 시설에 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배제 하도록 하였다.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에 적용 제외되는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II.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



<적용배제 되는 시설종류 및 규모>

- 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 ②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부수적으로 승마체험, 쫓짜기 체험, 마방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비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정규모의 승마장에 대해 체육시설 신고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I. 개 요

- ①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중 승마장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② 현행 승마장업의 시설기준 및 체육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실외 마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야 함
  - ▶실내 마장은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함
  -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함
  - ▶말 20두 이하인 경우 : 체육지도사 1인 이상
  - ▶말 20두 초과인 경우 : 체육지도사 2인 이상
- ③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승마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체육지도사 배치기준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 I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 대상 기준

- ① 3,000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 ② 1,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10조)

###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정사유

- 체험마을에서 음식물제공 및 즉석가공식품의 제조·판매 시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과 관련한 영업의 형태가 비상시적이며 개인적인 상업목적이 아닌 점을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시설기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체험마을에서의 음식제공 및 즉석가공식품의 제조·판매가 각 지역별 자연환경과 생산물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따라서 음식제공과 관련한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지역별 농어촌 실정에 맞게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물 및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등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며 위생교육 및 위생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은 다음과 같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 수입·운반·판매하는 업
  - ※ 영업의 세부종류 : 부록참조
- ③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영업시설기준의 적용을 완화하였다.

## II. 식품위생법 특례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도 음식물 및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과 관련한 영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음식물 및 가공식품을 제조·판매 시에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생교육 및 위생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다만, 음식물 및 가공식품을 제조·판매 시 그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서만 「도농교류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적용된 영업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7조>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는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의 기준은 음식물 및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한 것이며 이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은 각 지역여건에 맞게 필요한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제11조)

###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및 지정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 도입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제1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7가지 경우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다.
- ② 제2항은 행정처분 중 지정취소 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II.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②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④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 ▣ 도농교류활동의 지원(제12조)

####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강구 및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을 위해서는 농어촌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부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도농교류의 핵심적 주체인 도시민과 소비자단체가 농업·농어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농어촌현장체험 등의 정책지원과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농산물 홍보 등의 도농교류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민간기업·단체가 도농교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류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전환 및 도농교류활동에 도시민과 농어촌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I. 개요

- ① 제1항 및 제2항은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도농교류활동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무와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에 대한 홍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② 제3항은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③ 제4항은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II. 도농교류 활동 지원 현황

### 1. 도농교류 현황

- ① 도농교류 활성화의 목적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을 통해 농촌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전통문화, 공동체 의식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 ②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촌관광휴양단지가 개별 단위로 추진되었으며,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촌가꾸기추진대책」(2004. 1) 수립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5.4)을 수립하는 등 도농교류정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도농상생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 ③ 농촌관광은 질적 도약을 모색할 단계로서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공급기반 확충 및 수요창출이 필요하며, 농촌 특유의 amenity, 편안함을 활용한 차별성 있는 상품 개발 및 전문가 육성, 홍보 강화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 ④ 특히, 농촌관광을 주도할 마을지도자, 주민교육,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도시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마케팅 등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⑤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의 범정부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 ⑥ 기타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도농교류 정부포상, 농촌문화체험수기공모,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콘테스트,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개최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린포럼 개최
- ⑦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5.3 ~ 5.6)

-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장 마련
- ▶주민 스스로 타 마을과 차별화된 농산어촌체험 콘텐츠 발굴 및 정보교환,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역량 및 마을 자생력 증진

⑧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실적 : 기업체 3,364건 등 총 8,114건

▶교류실적 553억원, 평균 교류횟수 4.7회,

'07 말	기업체	소비자단체	사회/종교단체	관공서 등	농협 등	기타	계
계	3,364	486	416	1,163	986	1,699	8,114

## 2. 도농교류협력사업

- ①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농·소·정(농업인, 소비자, 정부) 사업”을 “도농교류협력사업”에 이관·통합하였다.
- ② 도농교류사업 유형을 종전 3개 유형에서 ‘농촌 폐교 활용부문’을 추가하여 공모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업유형	주요 사업 내용
농업·농촌체험 사업	농촌생태체험, 농촌일손돕기, 농사체험 등
농업·농촌지킴이 사업	농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등
농업·농촌알리기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방문, 농업·농촌가치교육 등
농촌폐교공간 활용사업	한문, 전통예절, 농촌문화교육 등

- ③ 사업자 선정은 사업단체의 요건심사, 정량평가 등 지역개발, 농촌관광관련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등에 의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 III.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및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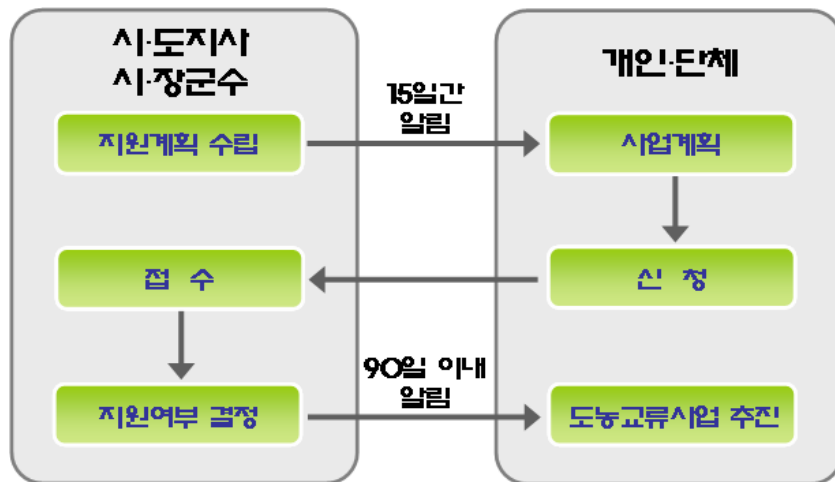
### 1.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시행(시행령 9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2.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시행규칙 제8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교류활동에 관하여 지원할 개인·단체를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
  -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 ② 지원 및 선정절차 (세부적인 선정기준, 절차, 지원금액 등 따로 정함)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13조)

### 제1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 ①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지속적인 농어촌관광의 정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될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실태, 시설·서비스 수준 등의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지원육성정책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I. 개요

- ① 제1항의 내용은 평가의 주체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② 제2항은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③ 평가업무는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협, 수협,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II. 현 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를 위해 참고할 만한 유사사례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관광농원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 등 각 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피드백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 1. 1998년 관광농원 평가 및 등급화 사례

- ① 관광농원 등급화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8년 7월에 관광농원 운영개선(안)이 수립되어 '98년 9월까지 관광농원 등급분류 기초조사가 시행되었고, '98년 10월에 시·도와 시·군에서 정밀재조사를 완료하여 등급분류가 시행되었다.
- ② 관광농원의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농외소득, 농원구성, 입지조건, 재무상태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관광농원협회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시장·군수가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확인한 후, 농림부에서 확정하는 체계로 시행되었다.
- ③ 등급분류기준은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점수 및 비율을 감안하여 1등급(85점이상, 20%), 2등급(84점이하-70점이상, 40%), 3등급(69점이하-60점이상, 25%), 특별관리대상(59점이하로 15%)으로 평가하였다.

#### <조사대상 전체 320개소 관광농원>

1등급 ~ 3등급의 등급평가 : 273개소(전체 85%), 특별관리농원 : 47개소(15%)

- ④ 2001년 한국관광농원협회 주관으로 전국 379개 관광농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등급재조정을 한 결과 관광농원의 수익성저하 등으로 우수농원이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의 비율을 감안한 등급배분은 수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평가가 중단된 상태이다.

### 2. 우수 농촌체험마을 선정 및 시상을 위한 평가

- 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수마을 선정 및 시상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 ② 심사대상은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로서 신청을 한 마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진다. 심사기준은 6개 항목으로 농촌체험관광 기반여건,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홍보, 친환경 농업 실천, 체험마을 조직 및 주민역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



다.

- ③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차 현지심사를 시행할 마을을 선정하고 2차 현지심사 때에는 심사위원이 합동으로 방문하여 평가한다. 3차 최종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심사를 반영하여 최종 수상마을을 선정한다.

### 3. 기타 평가사례

- ① 농협의 팜스테이는 접근성, 공동사업, 숙박시설, 프로그램, 마을운영, 주민참여 등 7개의 항목에 세부적인 평가기준으로 39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 등에 반영하고 있다.

<농협 팜스테이 평가항목>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1. 접근성	9	인프라	5	01.마을홈페이지 운영 02.인터넷 예약 가능 03.카드결제	
		접근편리	4	04.마을입구까지 버스운행 05.팜스테이 입간판설치	
2. 공동사업	16	특산물	4	06.마을 농특산물 판매 07.마을 농특산물 인터넷거래	
		공동운영	12	08.마을 공동숙소 운영 09.마을 공동식당 운영 10.마을 발전기금 적립	
3. 숙박시설	23	객실	12	11.객실 청결성 12.객실 안전성 13.객실 냉난방시설 14.객실 침구 청결성	
		화장실 등	11	15.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16.화장실 형태 17.화장실 및 샤워실 환경	
4. 편의시설	7	회의실	4	18.회의장(세미나장) 시설 19.마이크 시설 20.빔프로젝트 시설	
		체력단련	3	21.족(축,배,농)구장 설치 22.족(축,배,농)구장 시설 23.기타 편의시설	
5. 프로그램	23	생활문화	11	24.체험프로그램(봄) 25.체험프로그램(여름) 26.체험프로그램(가을)	
		관광지	5	27.체험프로그램(겨울) 28.마을 축제 개최	
		홍보	7	29.주변관광지의 수 30.주변관광지 연계	
6. 마을운영	11	활성화	6	31.마을해설사·체험지도사 32.안내책자(팜플렛) 구비	
		활동	5	33.참여농가수 34.방문객 수	
7. 주민참여	11	대표	6	35.장기발전 계획 수립 36.배상책임공제 가입	
		주민	6	37.마을대표의 의지 38.마을대표의 활동	
			5	39.마을주민의 친절성	
100					

- ②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협회 또는 연맹차원에서 개별 민박에 대한 평가와 등급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등급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간단하게 표준화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프랑스의 경우 지트 드 프랑스(Gites de France)라는 연맹을 통해 민박의 평가를 실시하고 4~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며, 독일의 경우도 독일관광협회(deutscher tourismusverband) 등을 통해 5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 평가의 대상이 개별 민박이므로 평가기준은 대부분 시설의 질과 편의성 등에

치우치고 있다.

### III. 사업의 평가기준 및 절차(시행규칙 제7조)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의 체계성	▶시설 수준의 적합성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	▶이용자의 만족도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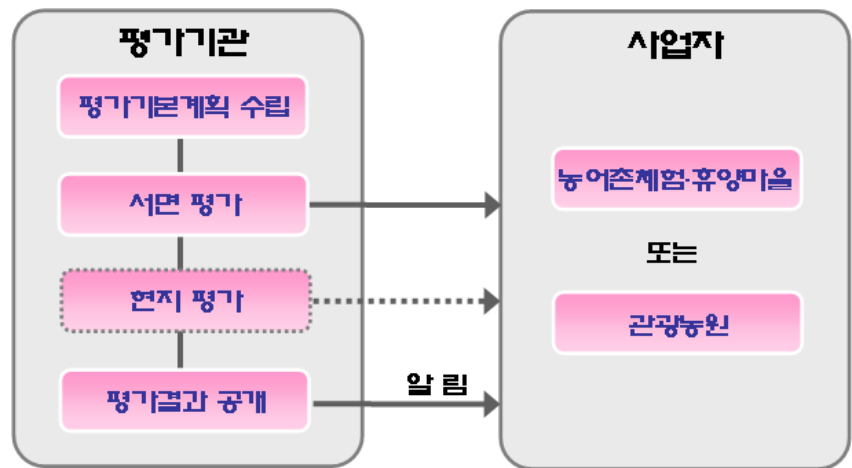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영리단체	

③ 평가기관(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 서면평가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 ▣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제14조)

### 제 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정사유

- 미래 주역인 초·중등학생들이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 초·중등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미래세대의 농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 I. 개 요

- ① 제1항은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다.
- ② 제2항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나 관광농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II.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도농교류확인서”에 관한 내용은 “**▣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15조)**” 참고

## ▣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15조)

### 제 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마을에서 이루어진 체험·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확인 및 초·중·고 교생의 학교수업으로서의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I. 개요

- ① 제1항은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에 기부(현금 및 현물)를 한 자에게 시장·군수가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기부 행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제2항은 농어촌체험·봉사활동에 대한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③ 기부금확인서 발급의 경우 관리적 측면(통계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발급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봉사 및 체험활동에 대한 확인서는 이·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 II. 현 황

### 1. 1교1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례 (농협중앙회, 2007년)

- ① 체험행사는 “식문화체험”을 희망하는 7대도시 초등학교 및 1교 1촌(1校 1村) 자매결연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계절에 맞는 “농식품 요리 만들기” 및 “농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 ② 총 46쌍의 마을 및 학교가 1교1촌을 맺음
- ③ 수도권 및 7대 광역시의 1교 1촌 결연학교 또는 농촌체험행사 실시

구 분	지 역
경기도(16회)	여주, 이천, 화성, 양평, 파주, 포천, 연천 등
강원도(6회)	춘천, 화천, 원주, 횡성, 홍천 등
충청도(10회)	당진, 옥천, 예산, 영동, 아산 등
경상도(11회)	상주, 영주, 칠곡, 구미, 의성, 예천, 김천 등
전라도(4회)	순창, 무안, 화순 등

### 2.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 연도별 추이 : '99(14.02%), '02(16.3%), '05(20.5%) <한국갤럽조사결과>
- ② 자원봉사활동 영역 :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관공서 등이 주축임

보건의료 기 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사회복지 기 관	환경단체	공익 민간단체	성인 취미단체	예술 문화단체
6.3	17.2	24.5	39.9	3.6	8.2	3.0	2.7
노동조합	정치조직· 정당	관공서	청소년단체	기업운영 민간재단	국제기구	-	계
3.0	1.2	13.9	1.2	0.9	1.5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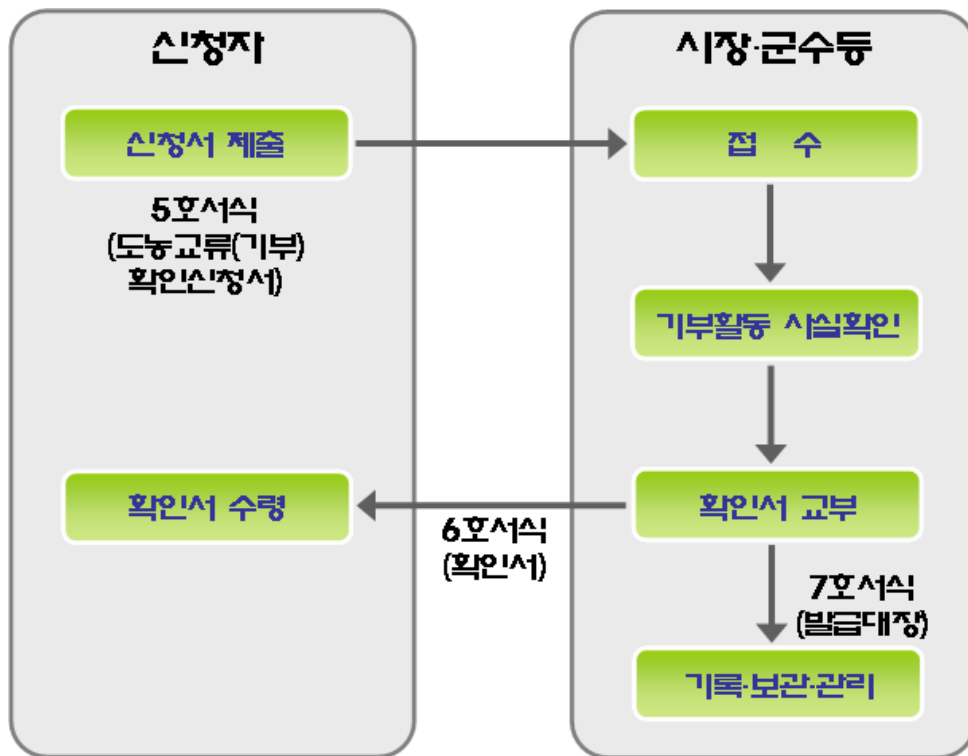
- ③ 학교급 및 학년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학교급	학년	봉사활동 권장시간	교육과정의 봉사활동시간
초등학교	1~4	연간 7시간 이상	연간 5~7시간 이상
	5~6	연간 10시간 이상	
중학교	전학년	연간 18시간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전학년	연간 20시간 이상	

### III.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

#### 1. 도농교류(기부) 확인서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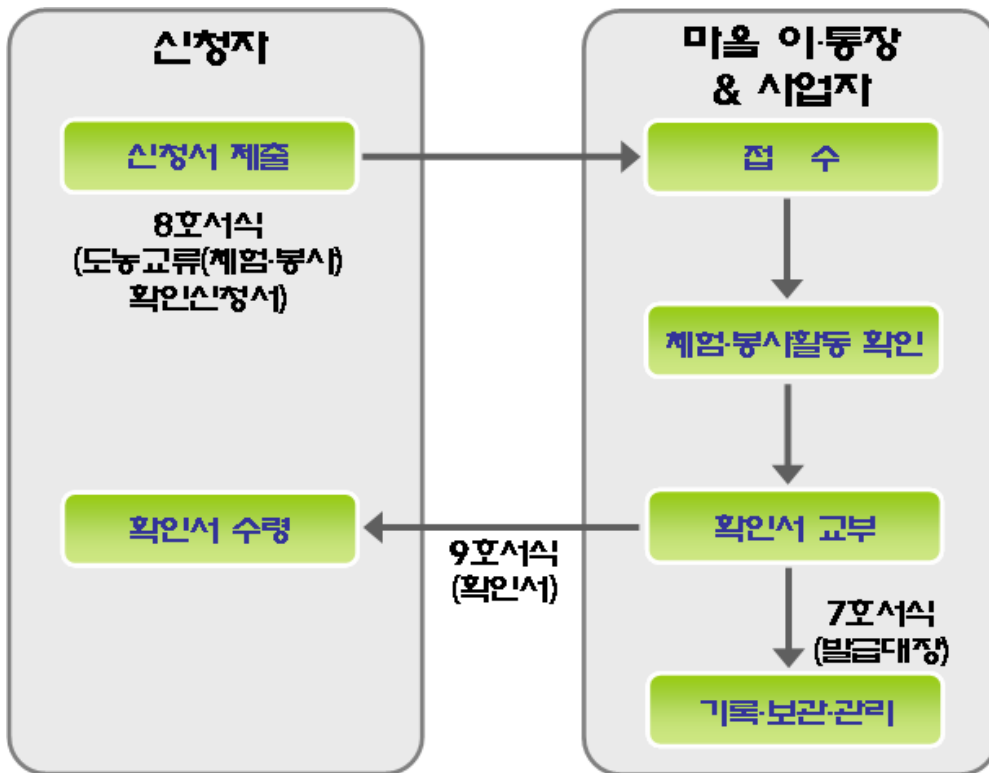
- ① 기부(현금 및 현물)에 대한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등은 기부(현금 및 현물)에 대한 “도농교류(기부)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시장·군수등은 기부(현금 및 현물)에 대한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2. 도농교류(체험·봉사) 확인서 발급절차

- ① 체험·봉사에 대한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③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제16조)

###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 제정사유

- 지자체에 농어촌투자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도농교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농어촌투자 유치 지원 기능을 도농교류센터에 부여함으로써 농어촌지역개발, 인적 자원 육성 등에 관하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투자유치 대상에 대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등 농어촌지역에 인구의 유입 및 도시 자본 투자 유치를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도시민이 농어촌에 살고 싶어도 농어촌이주에 따르는 준비사항, 절차, 방법 등의 정보부재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민들이 농어촌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정보제공, 교육·훈련, 정주 공간마련,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제1항은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원·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제2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도농교류센터”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 및 투자유치 촉진과 관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③ 또한 본 조의 시행령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촉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을 담고 있다.

## II. 농어촌 정주지원 활성화 시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정주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 III. 도농교류센터

### 1. 도농교류센터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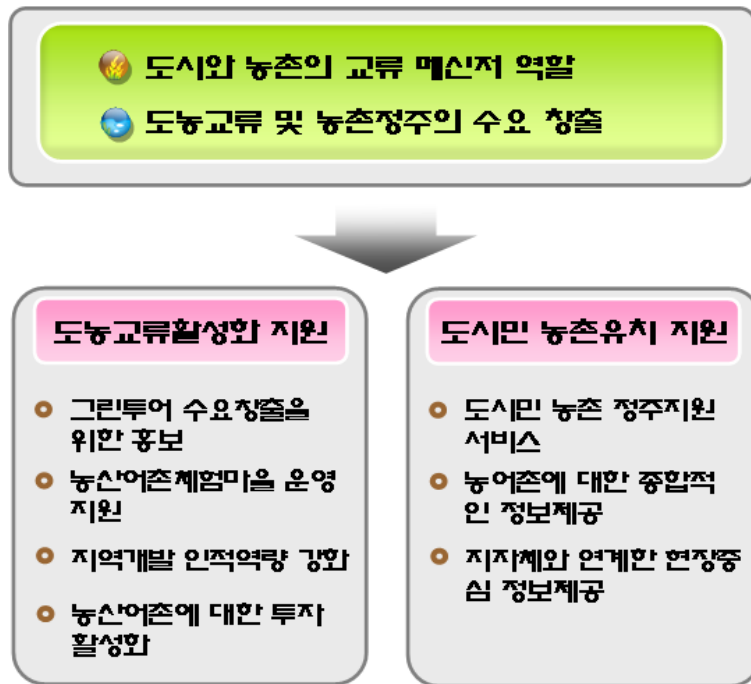
- ① 국가 및 지자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농교류센터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와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으며, 본 조에서는 도농교류센터를 통해 다음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16조제2항)

-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 ③ 도농교류센터는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그린투어 수요창출을 위한 홍보, 농산어

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지역개발 인적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④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주택정보, 귀농정보 등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하는 등 도농교류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농교류센터의 기능과 역할>

## 2.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예

- ① 「삶의질향상법」 제37조에 설립근거를 둔 도농교류센터는 한국농촌공사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조직은 2002년부터 운영해 오던 “농촌투자유치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 <도농교류센터 설립 경위>

- ▶ '02. 07. 18 : 농림부 농촌투자유치센터 개소
- ▶ '03. 01. 01 : 한국농촌공사 인수운영
- ▶ '04. 04. 01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 확대 개편 (삶의질향상특별법)

② 현재 도농 교류센터는 사용자 중심의 ‘웰촌’ 포털을 구축하여 농어촌종합정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5-2-2-4 서비스체계의 포털서비스 제공(<http://www.welchon.com/>)


허브포탈(5)	개인화포탈(2)	서비스포탈(2)	독립포탈(4)
전원/생활 체험/관광 주택/농지 지역/개발 교육/지원	MY Welchon 고객지원	지자체관 서비스 체험마을 서비스	농지은행 그린투어 인재뱅크 경영도우미

③ 농산어촌 삶의 질 서비스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 농산어촌 삶의 질 지표 체계화 및 생활권별 기준 지표 개발
- ▶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GIS기반의 기초생활환경 정보 서비스 개발

④ 도시민 농촌이주 붐 조성을 위한 농촌정주지원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 2007 전원생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p>- 행사명 : 2007 전원생활 엑스포 - 일 시 : '07. 10. 18 ~ 21 &lt;4일간&gt; - 슬로건 : Bravo! Green Life / 전원에서 여유와 행복을!</p>	
---	---

- ▶ 관람객규모 : (목표)10,000명 → (실적)14,275명(1일평균 3,569명)
- ▶ 전시장 구성

⑤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원마을 현장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 전원마을 현장체험단을 운영함으로써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전원마을과 농촌마을을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⑥ 농산어촌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하였다.

▶ 농산어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지자체의 투자환경 홍보와 투자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시자본 및 기업유치 지원

- ▶공사(公社) 도농교류센터는 지자체에서 발굴한 민자유치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
- ▶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05년부터 '07년까지 총 7회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여 134개 프로젝트 제안을 설명하고 12건, 30,793억 원의 도시자본 및 기업 유치

## 관련법령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제17조)

####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으면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인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도농교류과정에서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이한 환경 및 가치관의 차이로 상호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과의 상호이해를 돕고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 또한 농어촌에서도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력양성과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농교류촉진에 대한 선도역할을 담당할 인재가 양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 개요

- ① 본조는 농어촌지역의 인적역량강화 및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과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신청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② 제1항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제2항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제3항은 신청된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⑤ 제4항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⑥ 제6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II. 도농교류 관련 교육현황

- ① 2000년대 이후 시행되는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과거의 하향식 사업과는 달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 ②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시행과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인재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인재 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 ③ 마을 지도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야 하며, 또한 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단계(사업시행전 - 사업도입기 - 사업정착기 - 사업발전기)별로 교육 내용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④ 현재 도농교류센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지역개발 중장기 인력육성 대책”에 따라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정		주요교육내용
<b>동기화과정</b>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주민의 참여 및 동참 유도 ◦상호이해와 협력, 추진사례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기법, 진행 등
<b>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b>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리더양성 ◦농촌의 이해, 관계훈련 워크샵 등 ◦학습지향성, 성취지향성 등 자기관리 ◦조직헌신, 주도성 등 사업관리능력 ◦유연성, 타인육성 등 조직관리 ◦창의적개선 등 목표관리 능력 ◦정책설명, 종합토론 및 평가
<b>농촌지역개발 세부선택과정</b>	◦마을사무장과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역량
	◦체험지도사 과정	◦농촌체험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 양성
	◦마을해설사 과정	◦전통문화의 이해, 마을별 해설 실습
	◦향토음식개발 및 농가식당운영과정	◦향토음식개발, 농가레스토랑 운영
	◦지역자원 발굴과정	◦e-book활용, 지역자원분석, 활용
	◦홍보마케팅과정	◦e-book활용, 이벤트이론 등
	◦마을경영과정	◦e-book활용, 마을경영의 이해
	◦갈등관리기법과정	◦e-book활용, 갈등유형분석 등

### III. 인 증

#### 1. 인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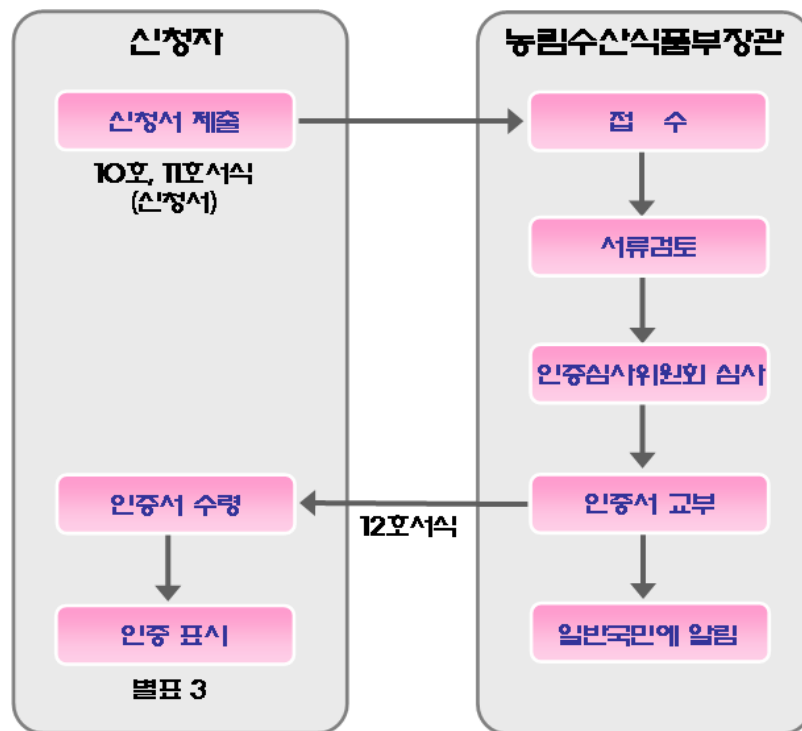
**인증내용** :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신청자** : 위 내용을 개설운영 또는 개발보급하려는 자  
**인증권자** : 농림수산물부 장관  
**인증기간** : 3년

- ① 인증의 대상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으로 네 가지이나, 그 성격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도농교류와 관련한 여러 기관과 단체 및 정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것이고,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은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 ③ 인증절차(하단참조)를 통해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개인 혹은 단체는 공식적으로 농어촌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를 양성할 수 있다.

#### 2. 인증절차 (시행규칙 제9조)

- ①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현황자료
  - ▶강사 개인별 이력서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인증이 결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⑥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



- ⑦ 그 밖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3. 인증 기준

- ① 이 법에서는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에서 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등을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② 인증의 기준에는 각 프로그램 및 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과목의 구성, 교육의 세부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의 경우는 위의 사항과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강사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시행규칙 제10조)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 분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도농교류 관련법령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2) 마을경영	
	3) 지역자원발굴·활용	
	4) 홍보·마케팅	
	5)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나.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20시간 이상
	2)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3) 농어촌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	
	4)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5) 지역사회 파트너쉽 형성	
	6) 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7) 혁신과 리더쉽	
	8) 농어촌지역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9)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시 설
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다.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라. 안전교육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 과 목	교육 시 간	교육 시 설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이론·현장학습· 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 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추어
나. 마을해설기법		
다.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4. 인증 표시

① 각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시행규칙 제11조)



②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위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 인증심사위원회(제18조)

### 제 18조(인증심사위원회)

-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증심사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필요하다.

## I.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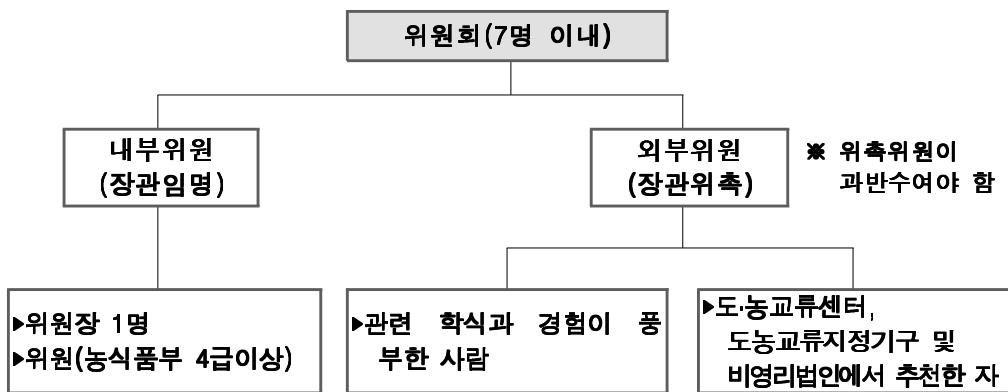
- ① 본조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세부적으로 인증심사위원회는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의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등 4가지 인증대상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진다.
- ③ 제1항은 인증심사위원회를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④ 제3항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

## II.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위원회의 구성(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① 위원회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으로 하며 그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내부 위원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농교류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 ④ 외부 위원으로는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장관이 위촉한다. 또한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도농교류지정기구 및 도농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외부 위원의 경우 그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의 임명 하에 위원회의 운영을 돕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의 운영(시행규칙 제13조~제16조)

- ① 위원장은 인증심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하지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나머지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된 경우 개의할 수 있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위원 중에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위 위원회의 운영·구성에 관한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 인证的 취소(제19조)

### 제 19조(인证的 취소)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정사유

- 인증심사제도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과 공적 권위에 의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취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운영자에게 인증취소 규정을 사전에 주지시켜 인증 받은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본조는 인증을 받은 도농교류·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의 인증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제1항은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③ 제2항은 인증 취소를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전문인력 활용(제20조)

###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 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사유

- 지속적인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휴양·체험 등에 관해 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한 전문인력의 육성 외에도, 육성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를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본조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② 제1항은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③ 제2항은 농어촌체험지도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④ 제3항은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⑤ 제4항은 인력활용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 II. 내 용

- ① 정부 및 지자체는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아래 그림과 같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b>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전문인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li> <li>▶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li> </ul>
<b>농어촌체험지도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안내</li> <li>▶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li> </ul>
<b>농어촌마을해설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마을 안내</li> <li>▶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li> </ul>

##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21조)

####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농교류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것
  3. 도농교류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도농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도농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도농교류지원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마련하고, 그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에 공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본조는 민간차원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할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과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 그리고 지정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② 제1항은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제2항은 정부로부터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대해 담고 있다.
- ④ 제4항은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II.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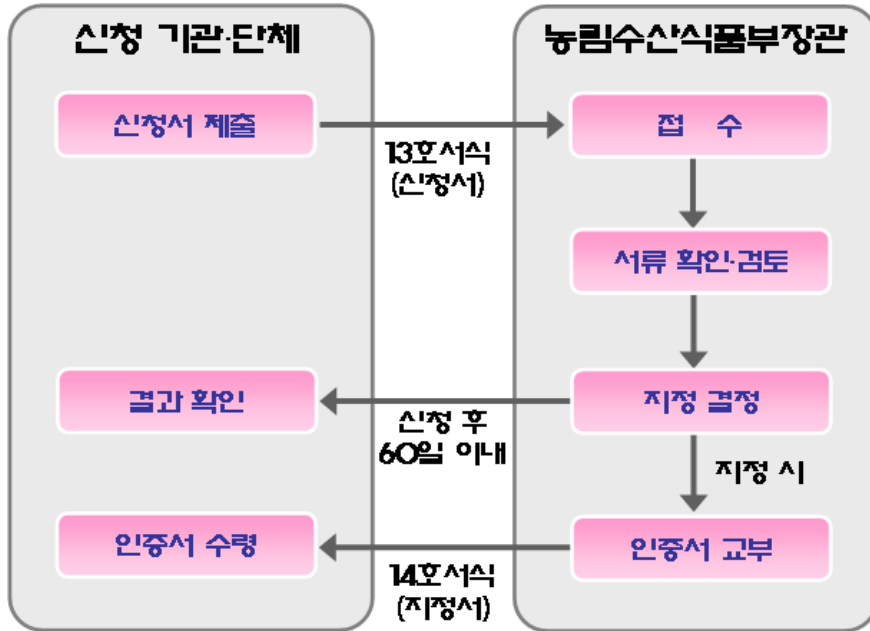
### 1.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요건(법 제21조제1항)

- ① 도농교류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③ 도농교류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이하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④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⑤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2.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수행 사업(법 제21조제2항)

- ①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 ②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 ③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④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 ⑤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절차(시행규칙 제17조)



- ①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 ▶사업계획서
  -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제22조)

###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정사유

- 도농교류지정기구로 지정받은 민간기관·단체의 적법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제1항은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한 것으로 도농교류관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② 제2항은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취소를 하여야 한다.
- ③ 도농교류지원기구에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도농교류지원기구에 지정 취소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청문을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제6장 보 칙

### ▣ 세제 및 금융 지원(제23조)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사유

- 체험 및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어촌마을에서의 기부행위가 활성화되어 도·농 간 물질 자원의 교류가 증대되기 위한 지원여건을 마련하였다.

### I. 도농교류비용 법인세감면(손금산입)을 위한 세무처리의 예시 ;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2004.10.11)

#### 1. 기업체와 농어촌마을 간의 유형별 거래형태

- 가. 기업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에게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체험, 체육활동, 야유회 등 비용 지출
- 나. 기업이 농촌 마을발전을 위해 컴퓨터 제공, 마을도로 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 무상 또는 일부 유상으로 시설지원을 하거나 현금으로 기부
- 다. 기업이 농촌마을에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운동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
- 다. 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직원의 워크샵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출
- 라. 기업이 농촌마을(자매결연을 맺은 마을 포함)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을 경우
- 마. 기업이 농촌마을(자매결연을 맺은 마을 포함)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 바. 기업이 농촌마을에 의료활동시 관련비용



## 2. 법인세 감면(손금산입)을 위한 세무처리

- 가. 복리후생자원의 농촌체류, 체육활동 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
  - 다만, 특정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급여로 간주하여 법인세 손금인정은 가능하나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됨
- 나. 농촌마을에 컴퓨터 제공, 마을도로 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손비처리가 가능
  -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제24조)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결손금)}×0.05
    -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
- 다. 기업의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운동 등 봉사활동 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복리후생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가능
- 라. 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직원의 워크샵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출
- 법인세법 제26조제3호(복리후생비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손금산입 가능
- 마. 기업이 농촌마을(자매결연을 맺은 마을 포함)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을 경우
- 이는 급여성복리후생비로서 세법상 인건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제1호에 근거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
  - 다만, 해당직원은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예상
- 바. 기업이 농촌마을(자매결연을 맺은 마을 포함)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사회복지법인)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가능
- 사. 기업이 농촌마을에 의료활동시 관련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체는 단독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의료법인(비영리)을 통하여 해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바목(의료법에 의

한 의료법인에 기부)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사업)에 근거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범위)제13호에 의거 무료진료의 가액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제24조)

### 제24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사유

- 농촌은 아니지만 사실상 농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준농촌”에도 도농교류교육사업,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농어촌체험교육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하여 농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 I. 개 요

- ① 본조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준농촌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II.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 1. 준농촌지역

- ①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개발제한구역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대상(국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절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지원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 관련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62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 제36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 ■ 홍보 및 조사·연구(제25조)

###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중요하며 범국민적인 홍보와 함께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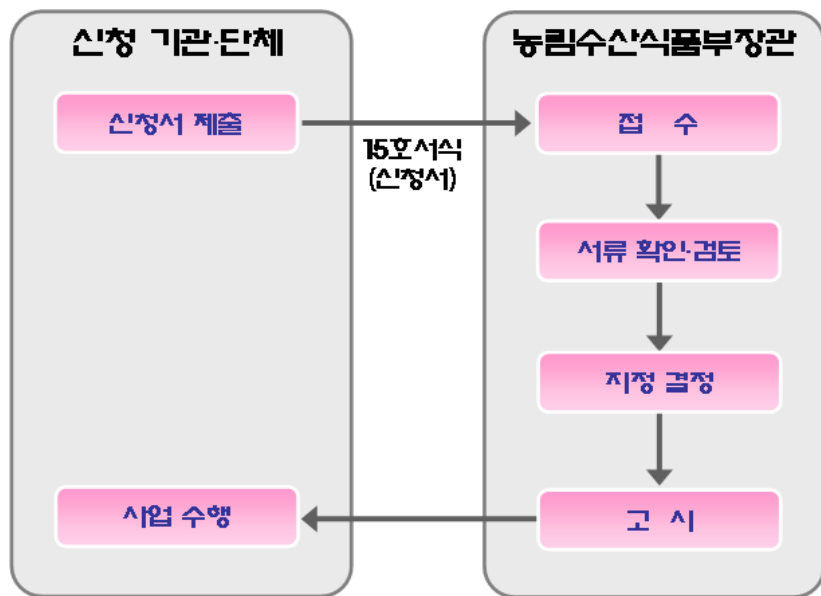
- ① 제1항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에게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 ② 제2항은 농어촌에 대한 홍보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II.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 ①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권한의 위임·위탁(제26조)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 제정사유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해당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서 시행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등에 대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양하여 수입·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③ 제2항은 도농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II. 권한의 위탁

### 1. 권한의 위탁 업무 및 위탁가능 기관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아래 그림에 표시된 업무를 오른쪽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업 무	위탁 가능한 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교류센터</li> <li>○도농교류지원기구</li> <li>○농협중앙회</li> <li>○수협중앙회</li> <li>○비영리민간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교류센터</li> <li>○도농교류지원기구</li> <li>○한국농촌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교류센터</li> <li>○도농교류지원기구</li> <li>○농협중앙회</li> <li>○수협중앙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교류센터</li> <li>○도농교류지원기구</li> <li>○농협중앙회</li> <li>○수협중앙회</li> <li>○비영리민간단체</li> </ul>

### 2. 위탁업무 고시 등 절차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장 벌 칙

## ▣ 벌 칙(제27조)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정사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벌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다.
- ② 이 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이하 법제7조제2항>
  - ▶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과태료(제28조)

### 제2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정사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도농교류프로그램 인증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을 두어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I. 개요

- ① 본조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별인 과태료 규정을 두어 행정의 공공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도농교류프로그램 인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사항과 과태료 기준금액에 대하여 담고 있다.
- ③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담고 있다.

## II. 위반행위와 과태료

- 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시행령 제15조)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 태 료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	20만원

## 제 3부



## Q & A

**Q**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마을협의회 구성 시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이때 마을협의회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 가구 수의 조건이 있나요?
- ② 아울러 가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A**

- ① 동법에서 마을협의회 구성 시 최소 가구 수 등의 조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선정 시 적용했던 지원요건인 다음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단일 마을인 경우 전체 20호 이상으로 과반수가 협정에 참여
  - ▶둘 이상의 마을인 경우 전체 30호 이상으로 과반수가 협정에 참여
- ② 동법에는 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가구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가구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Q**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 ① 영농·영어조합법인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 ②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 ③ 앞으로 신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A**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합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동법 제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누구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을협의회는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체험·

휴양마을회, 작목반 등 다양한 운영형태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영어조합법인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정부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내용을 행하고 지정요건이 갖춰진 마을은 누구나 지정신청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③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대상선정 기준은 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요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현행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겠습니다.

**Q**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

- ①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위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요?
- ② 식당을 운영할 경우 조리사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하나요?

**A**

- ① 동법 제10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만을 따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례규정 이외 다른 것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위의 영업행위를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할 수 있으나 지역의 특성상 식당 영업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예: 농업진흥지역 내, 상수도보호구역 등).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식당을 운영할 경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Q** 농어촌마을, 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에 체험봉사를 한 경우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초·중·고교학생의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으로 행하여진 경우 체험·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해당 마을의 이·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A**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되 도농교류사업의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
-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계획수립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각 사업에 맞게 지원을 할 개인·단체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Q** 도농교류촉진법에서 명시하고 인증제도 몇 가지가 있으며, 종류는?

**A**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인증에 2종류가 있고,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인증에 2종류가 있어 전체적으로 4종류가 있습니다.

**Q**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위한 특별한 자격 또는 제한이 있는지?

**A**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인정받기 위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신청 시 관련법 및 향후 고시될 예정인 세부인증기준에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시설, 평가수단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갖추어야 합니다.

**Q**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A** 인증기준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제2호)에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필요한 항목(프로그램 구성,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시설, 전문강사,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Q**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요건 중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의 의미는?**

**A**  
▶최소한 각 도별 1개 이상의 지사 또는 도본부 등 지역관할 부서가 존재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넣은 이유는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정부를 대신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Q**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요건 중에서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의미는?**

**A**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동 프로그램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진과 교육시설, 기자재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제 4 부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원문 3단비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li> <li>2.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li> <li>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li> <li>4. “마을”이란 농촌 또는 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li> <li>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p> <p>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p> <p>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업을 말한다.</p> <p>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p> <p>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p> <p>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b></p> <p>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li> <li>2. 사업계획서</li> <li>3.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li> </ol>	<p>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li> </ol>	<p>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협의회 규약</li> <li>2.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li> <li>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li> </ol>

법	시행령	시행규칙
<p>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p>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라 한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p>	<p>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p> <p>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p> <p>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p> <p>나. 운영자금 조달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 연월일</li> <li>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li> <li>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li> <li>4. 사업 개요</li> </ol> <p>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협의회 대표자</li> <li>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li> <li>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li> </ol>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li> <li>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li> <li>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정비</li> <li>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li> <li>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지원</li> <li>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li> <li>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p>	<p>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ol>	<p>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li> <li>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li> </ol> <p>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 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p> <p>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p>	<p>제5조(안전·위생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설로 운영하는 경우</p> <p>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p> <p>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p> <p>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li> </ol>	<p>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p> <p>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p> <p>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p> <p>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b>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b></p> <p>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p>	<p>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li> <li>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li> <li>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li> <li>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li> </ol>	<p>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li> <li>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li> <li>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li> </ol>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①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관한 사항</p> <p>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p> <p>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p>	<p>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한다.</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의 체계성</li> <li>2. 시설 수준의 적합성</li> <li>3.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li> <li>4. 이용자의 만족도</li> </ol> <p>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평가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p>	<p>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평가기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 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p>	<p>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li> <li>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li> </ol>	<p>한다.</p> <p>⑤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⑥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li> <li>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li> <li>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b></p> <p>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li> <li>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li> <li>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li> </ol> <p>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p>	<p>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b></p> <p>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시설 현황 자료</li> <li>2. 강사 개인별 이력서</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으면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⑦ 인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8조(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p>		<p>하여야 한다.</p> <p>⑧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p> <p>⑨ 그 밖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p> <p>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농교류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사람</li> <li>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li> <li>3.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법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도농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li> </ol> <p>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p> <p>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li> <li>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ol> <p>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항에 따라 인증 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b></p> <p>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li> <li>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것</li> </ol>	<p>제1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li> <li>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li> </ol>	<p>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li> </ol>

법	시행령	시행규칙
<p>3. 도농교류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p>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p> <p>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p> <p>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p> <p>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p> <p>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p> <p>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p>	<p>단체</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장비 보유 현황</p> <p>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p> <p>3. 사업계획서</p> <p>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칙</b></p> <p>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4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p>	<p>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p>	<p>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li> <li>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li> <li>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li> <li>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li> <li>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li> </ol>	<p>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li> <li>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li> <li>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li> <li>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정부 또는 지방자</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p>	<p>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도농교</p>	<p>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p> <p>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p> <p>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li> <li>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li> <li>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li> <li>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별 칙</b></p>	<p>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촌공사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li> <li>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li> <li>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li> <li>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i> </ol>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li> </ol>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li> <li>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li> </ol>	<p>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받지 아니한 경우</p> <p>③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휴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 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 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이 영은 6월22일부터 시행한다.</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시행령 관련 별표서식>

별

표

시행령 관련 : 제1호 내지 제2호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제적발일로 한다.
- 다.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 태 료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	20만원

비고: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규칙 관련 별표서식>

별

표

시행규칙 관련 : 제1호 내지 제3호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 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별표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 분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도농교류 관련법령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2) 마을경영	
	3) 지역자원발굴·활용	
	4) 홍보·마케팅	
	5)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나.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20시간 이상
	2)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3) 농어촌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	
	4)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5)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6) 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7) 혁신과 리더십	
	8) 농어촌지역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9)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시 설
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다.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라. 안전교육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시 설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마을해설기법		
다.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별표 3]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표시(제11조 관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번호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인증번호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번호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



<시행규칙 관련 별지서식>

# 별 지 서 식

시행규칙 관련 : 제1호 내지 제15호

<b>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b>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사업자(마을명)				
마을 소재지		(전화: )		
마을 현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사업개요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 【일반용지 70g/㎡】

( 뒤 쪽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마을협의회 규약 2.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2.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명세서 3.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가공시설:		
관련법규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p> <p>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이하 생략)</p>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사업자(마을명):

사업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대표자):

주소(대표자):

사업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지정번호	사업자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대표자)	주소	지정 연월일

297mm×210mm 【일반용지 70g/m<sup>2</sup>】

<b>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b>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마을 소재지			사업자 (마을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 내용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 【일반용지 70g/m<sup>2</sup>】

( 뒤 쪽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시 설 내 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가공시설:		
관 련 법 규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p>	

[별지 제5호서식]

도 농 교 류 ( 기 부 ) 확 인 신 청 서						
신청번호: 0000년 - 0000호						
1. 신청자 (전화: )						
성 명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처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 내용						
현금	현물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제출서류: 관련 증빙 영수증						

210mm×297mm 【일반용지 70g/m<sup>2</sup>】



[별지 제6호서식]

도 농 교 류 ( 기 부 ) 확 인 서						
1. 발급번호: 0000년-0000호						
2. 기부자 (전화: )						
성 명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처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 내용						
현금	현물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 【일반용지 7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b>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 확인서 발급대장</b>								
발급연도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내용								
일련 번호	날짜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교 류 확 인 내 용			발 급 내 용	
		기부자 또는 체험·봉사자 주소 기부처 또는 체험·봉사활동장소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등)		기부 금액	체험·봉사 활동 시간	확인자	발급 번호	발급 일자

210mm×297mm 【일반용지 70g/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도 농 교 류 ( 체 험 · 봉 사 ) 확 인 신 청 서		
1. 신청자		(전화: )
성 명 ( 단 체 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체험봉사활동 장소		
마을 · 대표자명 (사업자명)		
소 재 지		
3. 신청 내용		
활동기간		비고
활동시간		
활동횟수		
활동사항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00마을 이 · 통장 00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대표 귀하 00관광농원사업자 대표</p>		

210mm×297mm 【일반용지 70g/m<sup>2</sup>】

[별지 제9호서식]

도 농 교 류 (체 험 · 봉 사) 확 인 서			
발급번호: 0000년-0000호			
1. 신청자		(전화: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발급자			
마을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활동 내용			
활동기간			비고
활동시간			
활동횟수			
활동사항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00마을 이·통장 00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대표 00관광농원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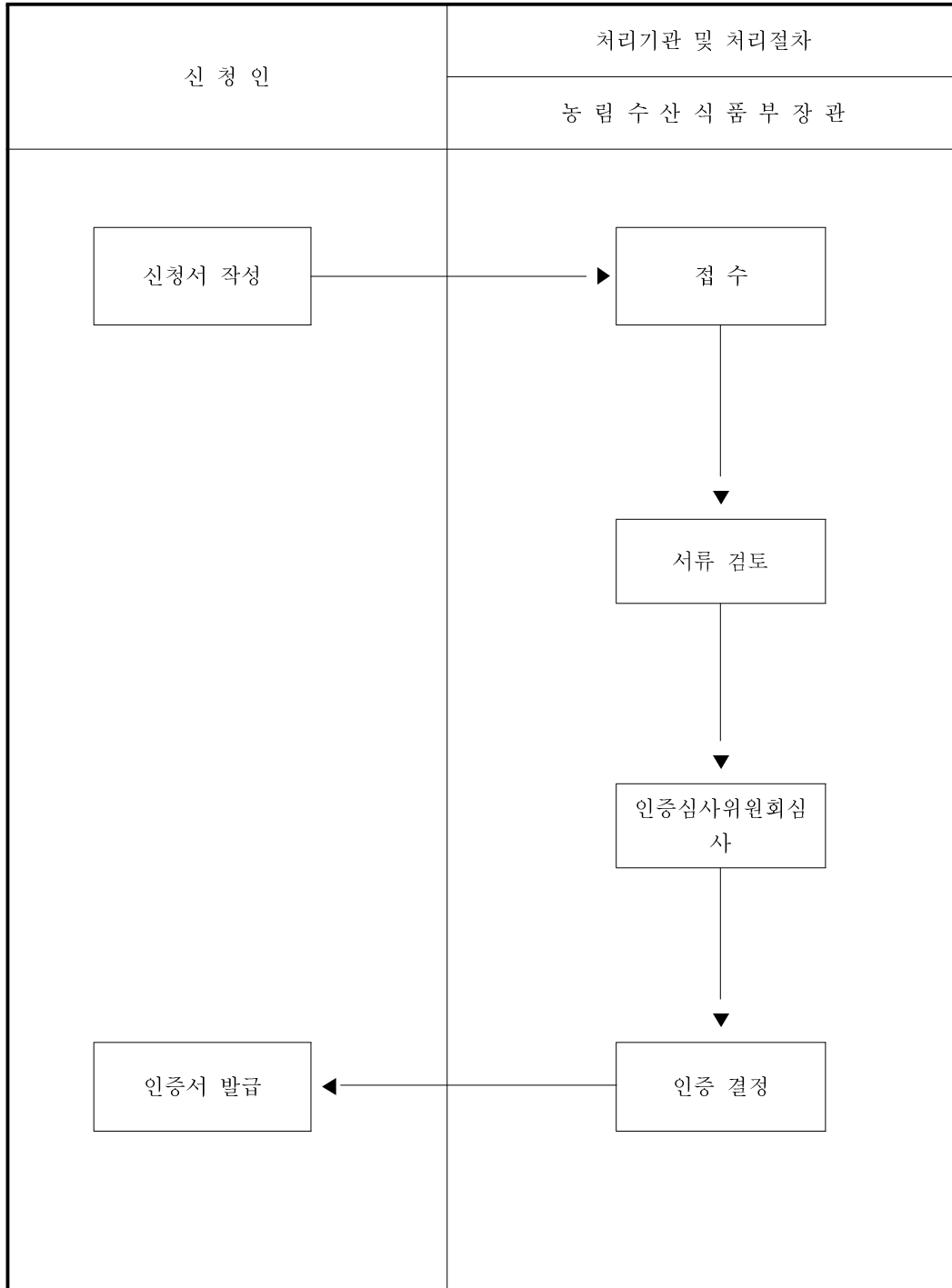
210mm×297mm 【일반용지 70g/m<sup>2</sup>】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신청자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요	프로그램 명칭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계	강의	실습	
	교육 내용				
	진행 방법				
	강사 자격				
평가 방법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1. 사업자등록증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 【일반용지 70 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신청자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분야 (√으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체험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농어촌마을해설가							
기본교육의 내용	기본교육 내용	강사	교육교재		교육시간			
			교재명	발행처 · 저자	계	강의	실습	
교육과정 내용	프로그램 명칭	제공기관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방법 및 시간		강사 구성	
					계	강의		실습
교육시설 현황	시설구분		시설갯수		면적		비고	
	강의실				㎡			
	실습장				㎡			
	사무실				㎡			
	화장실				칸			
	건물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개조, <input type="checkbox"/> 구조변경					
	소유관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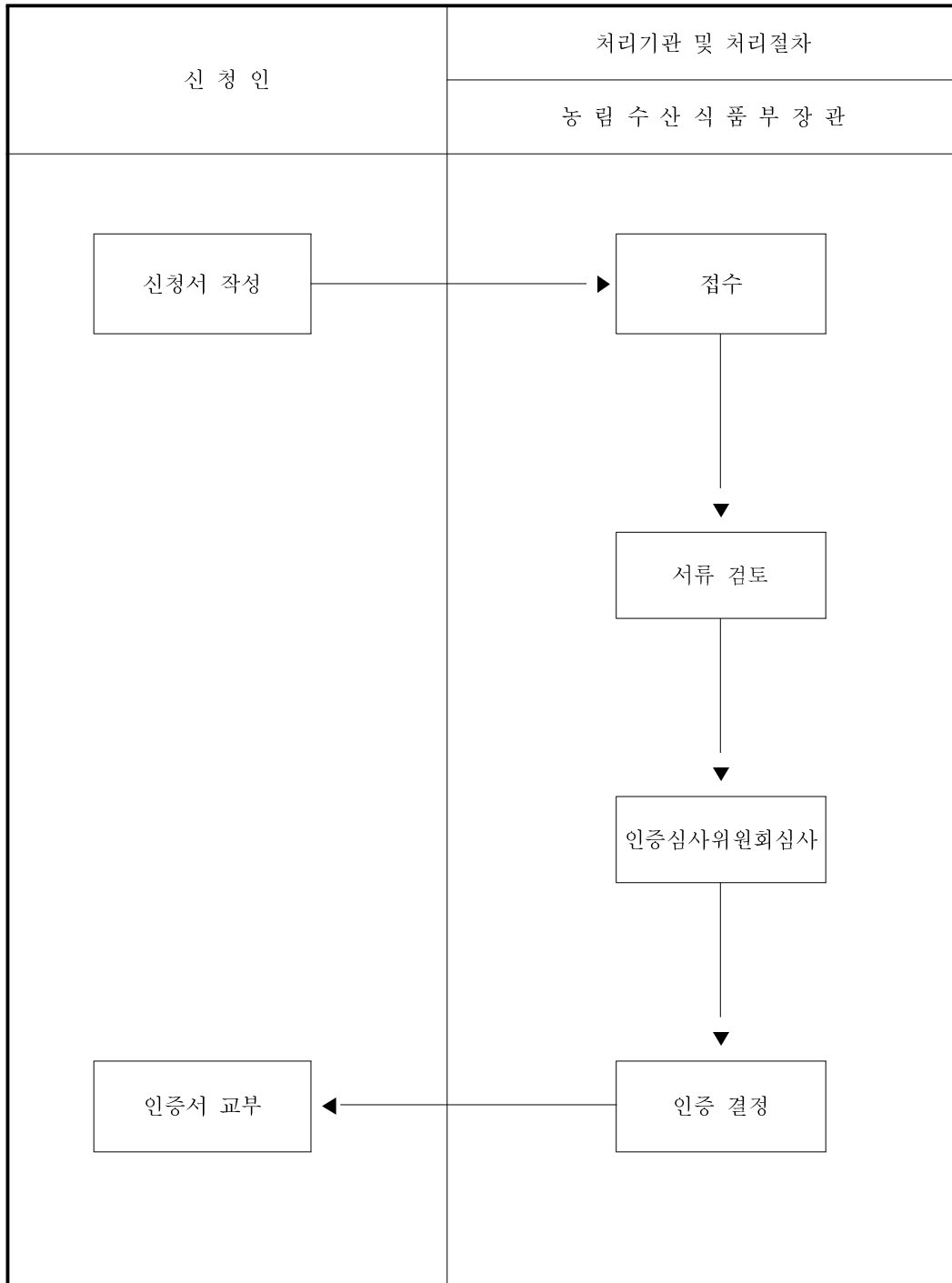
210mm×297mm 【일반용지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 인 증 서

○ 인증번호:

○ 기관·단체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인증분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유효기간: 20 . . . . ~ 20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장 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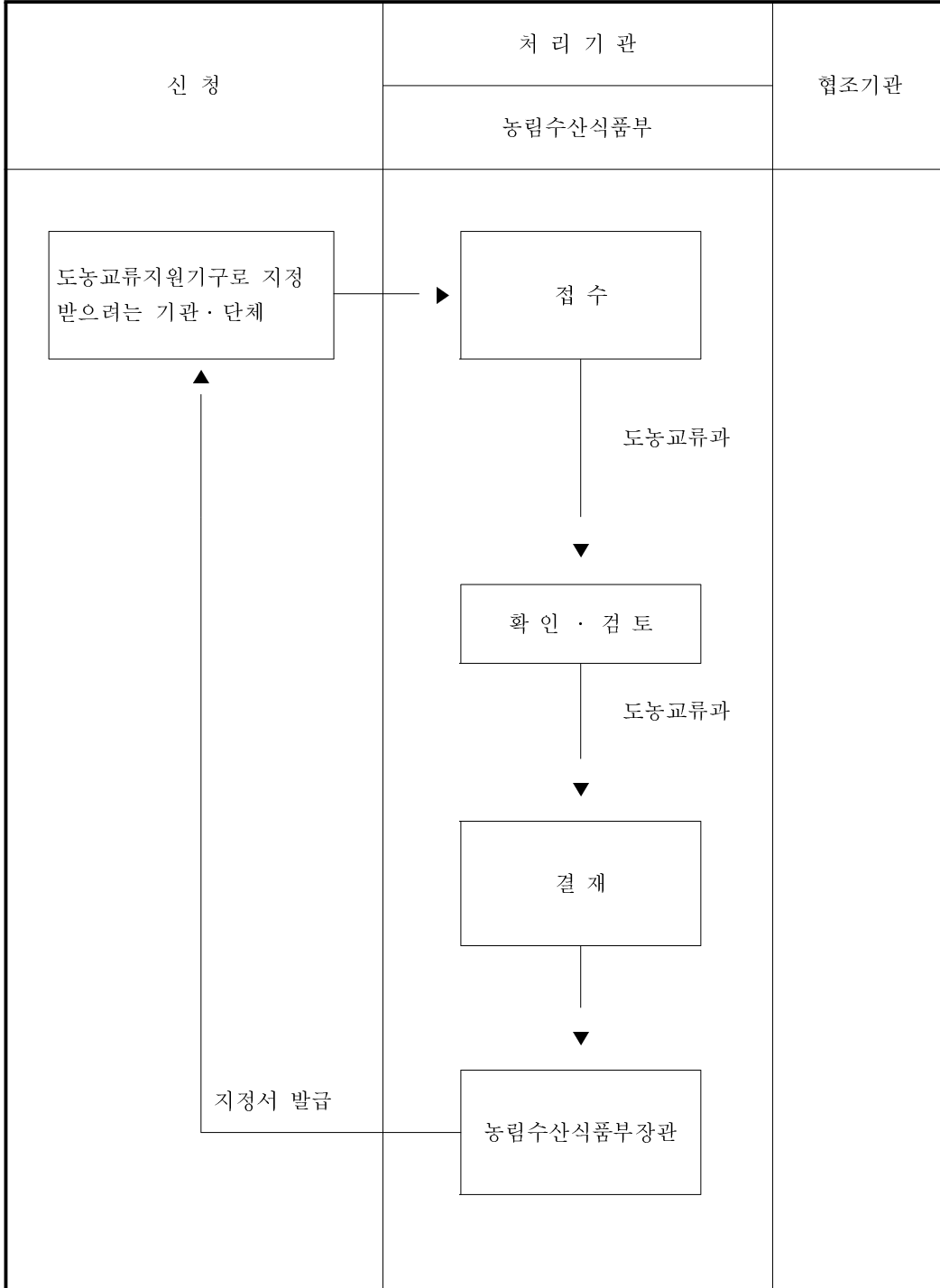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b>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b>		처리기간
		60일
① 기관·단체명		
②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li> <li>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li> <li>3. 사업계획서</li> <li>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li> </ol>		

210mm×297mm 【일반용지 70 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b>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b>			
①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	
②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③ 소재지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년 월 일</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별지 제15호서식]

<b>홍보·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b>		처리기간	
		20일	
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p>「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귀하</p>			
※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li> <li>2. 기관(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li> <li>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li> <li>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li> </ol>			

210mm×297mm 【일반용지 70g/㎡】

# 부 록



■ 부록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적용기준사항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수동식소화기 간이소화용구	1. 건축물의 연면적	33 m <sup>2</sup> 이상	
			2.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전부
		자동식소화기	APT		전층
	옥내소화전설비 (가스시설 및 지하구 제외. 단, 아파트·업무시설·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가능)	1. 건축물의 연면적		3,000 m <sup>2</sup> 이상	
		위의 1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m <sup>2</sup> 이상 전층	
		2.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 m 이상	
		3. 건축물의 연면적(근린생활·위락·판매·영업·숙박·노유자의료·업무·통신·촬영·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 및 복합건축물)		1,500 m <sup>2</sup> 이상 전층	
		위의 3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300 m <sup>2</sup> 이상 전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바닥면적		200 m <sup>2</sup> 이상	
		5. 공장 및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량		수량의 750배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단,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	1. 문화·스포츠시설,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시청, 방송국, 신문사, 출판사, 인쇄업, 도판제작업, 사진촬영업, 동식물원은 제외) 전층	수용인원		100인 이상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m <sup>2</sup> 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	1,000 m <sup>2</sup> 이상
			무대부면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경우	
위의 층 이외에 있는 경우		500 m <sup>2</sup> 이상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층수가 3층 이하		6,000m <sup>2</sup> 이상 전층	
		층수가 4층 이상		5,000m <sup>2</sup> 이상 전층	
		수용인원		500인 이상 전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4. 노유자시설·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연면적		600m <sup>2</sup> 이상 전층			
5.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랙크식 창고(선반 또는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의 연면적		1,500m <sup>2</sup> 이상			
6.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			
7. 1목내지5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 제외)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m <sup>2</sup> 이상			
8.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위의 1~7에 부속된 것			
9.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내의 학생수용 기숙사로 연면적		5,000m <sup>2</sup> 이상 전층			
10. 5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로서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량		수량의 1,000배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	1.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000 m <sup>2</sup> 이상 전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 연면적		100 m <sup>2</sup> 이상		
물분무등 소화설비 (단,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	1. 항공기 격납고		전부		
	2. 주차용건축물의 연면적		800 m <sup>2</sup> 이상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 m <sup>2</sup> 이상		



	제외)	4. 기계식주차장	20대 이상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의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사용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은 제외)·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의 바닥면적(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보고 산정)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V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	300 m <sup>2</sup> 이상	
옥외소화전설비(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 제외)		1. 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9,000 m <sup>2</sup> 이상	
		2. 지정문화재의 연면적	1,000 m <sup>2</sup> 이상	
		3. 1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량	수량의 750배 이상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 중 터널과 사람 거주 않거나 벽없는 축사 제외)	400 m <sup>2</sup> 이상	
		2.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m <sup>2</sup> 이상 (공연장 100 m <sup>2</sup> 이상)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 m 이상	
		4.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전부	
	비상방송설비(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1. 건축물의 연면적	3,500 m <sup>2</sup> 이상	
		2.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전부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	
	누전경보기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축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를 시 최대계약전류용량)	100 암페어 초과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일반목욕장제외)·위락·숙박·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600 m <sup>2</sup> 이상	
		2.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관광휴게·지하가(터널 제외)·판매·영업·공동주택·업무·운수자동차관련·공장 및 창고시설	1,000 m <sup>2</sup>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3. 교육연구(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제외)·동식물관련·위생 등 관련 및 교정시설로 연면적	2,000 m <sup>2</sup> 이상	
		4. 지하구	전부	
5. 터널로서 길이		1,000m 이상		
6.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00 m <sup>2</sup>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인 이상		
7. 2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량		수량의 500배 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1.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근무시간 이외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1,500 m <sup>2</sup> 이상		
	2.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	500 m <sup>2</sup> 이상		

		3.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 바닥면적	500 m2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1. 아파트	1,000m2 미만	
		2. 기숙사	1,000m2 미만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연면적	2,000m2 미만	
		4. 숙박시설로 연면적	600m2 미만	
		5. 4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전부	
시각경보기		1.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전부	
		2.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전부	
		3. 통신활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전부	
		4. 지하상가	전부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1.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전부	
		2.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전부	
통합감시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규정의 공동구	전부	
피난 설비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피난층2층11층 이상과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제외)	전부	
	인명구조 기구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의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단, 병원은 인공소생기 제외)	전부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지하상가· 영화상영관	층마다 2대 이상	
	유도 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제외)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전부	
	비상조명 등 (가스시설, 창고 등 제외)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m2 이상
			2. 1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m2 이상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휴대용비상 조명 등		1. 숙박시설	전부	
		2.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지하 상가·영화상영관	전부	
소화용 수설비	상수도소화용 수설비	1. 건축물의 연면적(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 제외)	5,000 m2 이상	
		2.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인 것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무대부의 바닥면적 영화상영관으로 수용인원	200m2 이상 100인 이상
		2. 근린생활위락, 판매 및 영업,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m2 이상 모든 층
		3.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m2 이상
		4. 지하가(터널제외)로 연면적		1,000m2 이상
		5. 지하가 중 터널로 길이		1,000m 이상
		6.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아파트 제외)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 강기의 승강장		전부

연결 송수관설비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m <sup>2</sup> 이상
	2. 1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하층 포함한 층수		7층이상
	3. 1목,2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m <sup>2</sup> 이상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2,000m이상
연결 실수설비(지하구 제외)	1.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1,000m <sup>2</sup> 이상
	2.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m <sup>2</sup>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시), 학교의 지하층	700m <sup>2</sup> 이상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용량		30톤 이상
4.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		1목, 2목에 부속된 것	
비상콘센트설비(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		11층 이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		1,000m <sup>2</sup>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가스시설 제외)	1. 지하가(터널제외)로서 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
	2.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m <sup>2</sup>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m <sup>2</sup> 이상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4. 지하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규정의 공동구		전부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전부

■ 부록 2 영업의 종류(식품위생법)

종 류	세부항목 및 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li> <li>▪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li> <li>▪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li> <li>▪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 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li> </ul>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식품 판매업	(4) 내지 (8)외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b>식품보존업</b>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 외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b>용기·포장류 제조업</b>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b>식품접객업</b>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부록 3 업종별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종 류	세부항목 및 시설기준
<b>즉석 판매제조· 가공업</b>	<p><b>가. 건물의 위치등</b></p> <p>(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식품매장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p>⇒(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p> <p>(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p> <p>(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p> <p><b>나. 작업장</b></p> <p>(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p> <p>(2) 제조·가공실의 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p>⇒(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p> <p>(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p> <p>(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삭제 &lt;2000.8.8&gt;</p> <p>(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p> <p>(4) 삭제 &lt;1999.12.29&gt;</p> <p>(5)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다. 식품취급시설등</b></p> <p>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 (2)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한다.
-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3)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 류	세부항목 및 시설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b>식품접객업</b> <b>(휴게음식점영업 &amp; 일반음식점영업)</b></p>	<p><b>가. 공통시설기준</b></p> <p>(1) 영업장</p> <p>(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삭제 &lt;99.12.29&gt;</p> <p>(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p> <p>(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조리장</p> <p>(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 이어야 한다.</p> <p>(라)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①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p> <p>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p> <p>③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업을 하려는 경우</p> <p>④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p> <p>(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p> <p>(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사) 삭제 &lt;1999.12.29&gt;</p> <p>(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급수시설</p> <p>(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p> <p>(4) 삭제 &lt;2000.8.8&gt;</p> <p>(5) 화장실</p> <p>(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p> <p>(라) (다)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p> <p>(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나. 업종별시설기준</b></p> <p><b>(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b></p> <p>(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p> <p>(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실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실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p>
--	---

	<p>여야 한다.</p> <p>(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①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p> <p>②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p> <p>③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p> <p>(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바)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	--

■ 부록 4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1. 전액공제기부금 (법2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및 기타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액 (10만원 이내 금액은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됨) ⑩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 ① 2의 2호의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⑤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및 소득세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이 해설집은 새로이 제정·공포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신과 제정취지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조문해석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며 제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총 4부로 편집·구성하였으며, 그 특징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제1부는 총설로서 현재 도시와 농촌의 현황, 「도농교류촉진법」의 제정배경과 과정, 그리고 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 ▶ 제2부는 조문별 제정사유, 관련법령, 절차 등의 해설내용을 하위법령과 연결하여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아울러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의 주요내용과 절차 등을 도식화하여 정리하였다.
- ▶ 제3부는 Q & A 형식으로서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한 예상 질문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구성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 제4부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원문을 3단비교 형식으로 담았다.

작성자 :

김경찬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대래 (한국농촌공사 도농교류센터)

감 수 :

최국일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 이 해설집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TEL. 02) 500-1811, FAX. 02) 503-7904